

##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행사 자료집

# 부마에서 광주로

### 부마민주항쟁 35주년기념 학술대회

일시 : 2014년 10월 14일(화) 오후 1시 ~ 오후 6시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 17번지)

주최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 민주연구단체협의회(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제주43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대 518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 부마민주항쟁 35주년기념 학술대회

일시 : 2014년 10월 14일(화) 오후 1시 ~ 오후 6시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 17번지)

주최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 민주연구단체협의회(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제주43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대 518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 행사 프로그램

등록	13:00~13:05	
인사	13:05~13:05	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명예이사)
축사	13:10~13:30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부마항쟁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위하여
기조강연	13:30~14:00	안병욱(전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
<b>'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재'</b>		■ 진행 : 유철인(제주대 교수)
제1부	■ 발제 I 부마민주항쟁과 주체	
	■ 발제 II 부마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	차성환(정치학 박사)
	■ 토론 : 정성기(경남대 교수/부마항쟁 참여) 정호기(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은진(경남대 교수)
	휴식	15:20~15:30
<b>'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의 방향'</b>		
제2부	■ 발제 I 부마민주항쟁 국가의 과거청산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 발제 II 과거사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 :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안경호(4·9재단 사무국장)
	휴식	16:50~17:00
<b>'부마에서 광주로'</b>		■ 진행 : 고호석(부마항쟁 참여자)
제3부	■ 발제 : 부마에서 광주로	
	■ 토론 : 김하원(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나간채(전남대 명예교수)
	■ 토론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종합토론 : 참석자 다함께	

## 자료집 목차

- 
- 기조발제
    - 부마항쟁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위해 안병욱
  - 제1부 발제문 I
    - 부마항쟁과 주체 차성환
  - 제1부 발제문 II
    - 부마항쟁과 민주화운동 이은진
  - 제1부 토론문 I
    - '부마항쟁과 주체'에 대한 논평 정성기
    - '부마항쟁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논평 정성기
  - 제1부 토론문 II
    - 사회운동 연구방법론의 숙고와 개념들의 의미 그리고 적용의 어려움 정호기
  - 제2부 발제문 I
    - 부마민주항쟁과 국가의 과거청산 김형태
  - 제2부 발제문 II
    - 과거사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이영일
  - 제2부 토론문 I
  - 제2부 토론문 II
    - 과거청산의 미해결 과제 안경호
  - 제3부 발제문
    - 부마에서 광주로: 민주항쟁의 사회운동사적 이해를 위한 시론 나간채

<기조발제>

## 부마항쟁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위해

안병욱(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1. 머리말

1979년 10월 부산대학의 교내시위로부터 10여일 만에 유신체제 붕괴로 이어진 과정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전개였다. 일회적으로 끝날 것 같았던 학생시위가 인근 대학 또 인접 도시로 전파되었고, 학생시위에서 시민항쟁으로 확대되었다. 당국은 이를 ‘단순한 시위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소요이며 화염병 각목을 사용하고 또 인명 실상이 가능한 사제총기를 사용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의 부마항쟁이 사람들의 의표를 짜르면서 확대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가두시위에 시민들이 호응하면서 동참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마산시의 거리와 시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시위대에 직접 합류해서 투쟁에 나섰다. 급기야는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아닌 시민들이 시위투쟁을 주도해 나갔다.

유신체제하에서 철저하고 무자비한 탄압이 행해졌기 때문에 밖으로 반유신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존이나 목숨의 희생을 각오해야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유신시위에 일반 시민들이 동조하면서 함께 행동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부마항쟁에서는 학생 시위에 시민이 적극 결합하여 의외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련의 사태전개는 한반도 기득권 세력의 존립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성을 잊고 펼쳐지던 박정희 유신 통치는 부마항쟁을 계기로 더욱 흥포스런 광란 상태에 빠졌다. 이는 대응책을 놓고 권력층 내부의 갈등과 분란을 야기했으며 마침내 박정희가 살해당하는 10·26으로 끝맺음했다.

그동안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부마항쟁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학술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냈다. 그 성과로 이제 한국현대사에서 갖는 부마항쟁의 의의와 성격에 대해 수준 높은 이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연해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부마항쟁을 전후해서 전개된 일련의 격동적인 파동을 상호 연계해서 검토하지 못한 점을 언급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격렬해진 학생시위와 인근 학교로의 전파, 거리 시민의 적극동조와 참여,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사흘 계속된 투쟁 그리고 폭력 이외에는 달리 대처할 여력이 없어 허둥대다가 스스로 와해되는 위정자들의 행태와 연이어진 박정희 피살 등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또 반유신운동의 정점에 위치한 부마항쟁이 4·19부터 1960, 70년대 민주화운동과 광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등으로 간단없이 전개되어온 일련의 민주민중항쟁의 흐름 속에서 갖는 의미가 파악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부마항쟁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일은 곧 민중항쟁을 통한 한국사회

민주발전의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다.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면서 각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할 때 흔히 의외성을 내세우거나 때로는 우연적인 것으로 돌리게 된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때 유의해야 할 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 2. 반유신운동을 승리로 이끈 성과

박정희는 유신체제로 종신집권과 제왕적 지위를 확보했다. 대통령직은 6년 임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에게 임기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할 뿐이었다. 유신체제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전적으로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시켜 무소불위의 통제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저항과 민주인사,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이었다. 유신 직전 학계 언론계 심지어 사법부 등 각계의 자율화 요구를 포함해서 5·16 이후 이어진 치열한 반정부 시위는 박정희에게 가장 큰 압박이었으며 종신집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난제였다. 이 같은 민주화운동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종신집권은 어려웠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장치가 무소불위의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조치였다. 국정 전반에 걸쳐 특별조치라는 명목으로 전횡할 수 있는 무한대의 권리였다. 이는 국가안보를 평계 삼는 계엄령과는 별도로 반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비상조치권이었다.

유신체제하에서 대규모 탄압이 무시로 남발되었다. 1973년 10월 2일에 반유신 학내시위가 최초로 일어났고 이때 한꺼번에 연행된 학생이 215명에 이르렀다. 1974년부터는 민주화운동에 나선 수많은 학생과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긴급조치라는 강압책을 잇달아 발동하였다. 긴급조치 4호의 경우 ‘인민혁명을 기도한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하면서 발령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1,024명이나 체포 연행하여 수사하였고 230명을 구속하였으며 군법회의를 통해 그들에게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사형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였고 8명을 인혁당 혐의를 씌워 사형에 처했다. 긴급조치 9호의 경우는 1975년부터 5년간이나 지속되었는데 정부의 공식 발표로도 구속자가 550명에 이르렀고 10·26이후인 1979년 12월 당시에도 수감 중인 사람만 110명에 달했다.

박정희의 유신통치는 1979년 들어 균열이 심해졌다. 우선 그해 5월 야당 대표 경선에서 박정희에게 협조적이었던 이철승이 패배하고 김영삼이 선출되었다. 총재로 당선된 김영삼은 대정부 강경노선을 펼쳤다. 이는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며 반유신 운동을 확장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YH부역의 폐업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도 야당 당사로 몰려와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종신집권에서 나아가 권력세습까지 노렸던 박정희는 이런 누수를 용인하면서 인내하지 못했다. 박정희는 사법부를 동원해 김영삼의 총재 직무를 정지시켰고 또 김영삼이 뉴욕타임스 신문과 회견한 내용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켰다. 이렇듯 이성을 잃고 횡포를 자행하는 권력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때 부산대학생들이 점화한 반유신 시위는 삽시간에 요원의 불길처럼 확대되었던 것이다.

1979년 10월의 부마항쟁과 그 이후의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소 의외의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부산대학 시위대는 교내를 벗어나 도심시가지로 진출했는데 이는 다른 대학들에서 일어났던 반유신 데모들이 교내의 일회성 시위로 끝났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또 부산대학에서 시작된 시위는 동아대 학생들의 참여로 이어졌고, 이를 후에는 마산의

경남대학생 시위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반정부 시위를 주동했던 학생들이 고심하면서 모색했던 것은 시내에서 가두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대학가의 반유신 시위 소식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두 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동조를 이끌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때로는 성명서 유인물을 인파 속에 흘뿌리면서 사라지기도 했고 달리는 버스 환기통으로 날리면서 살포했다. 여러 기묘한 방법을 동원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과보다는 혹독한 탄압을 초래할 뿐이었다. 그런데 부산 마산에서 대학생 시위에 예상 밖으로 시민이 적극 호응하면서 참여했고, 그 결과 폭동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로 대규모의 강력한 반유신향쟁이 전개된 것이다. 당시 시위 현장을 살펴봤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민란이라는 궁색한 설명 외에 달리 표현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혀 새로운 양상의 반정부 항쟁이었다.

이러한 미증유의 항쟁에 직면한 박정희유신정권은 어느 때보다 사태의 심각성을 민감하게 느끼고 공수특전단과 해병대등 군 특수부대까지 투입해서 폭력으로 진압하고 부산과 마산일원에 각각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했다. 시위에 나선 학생 시민들을 1,563명이나 연행하였고 또 우범자 일제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4일 만에 4,200명을 잡아들이는 등 군대를 앞세워 탄압에 나섰다. 박정희는 항쟁이 미구에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만일 그러한 상황에 이르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면서 진압에 나서겠다고 위협하였다. 하지만 유신체제는 임계점을 넘어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부마항쟁은 이승만이 4·19로 축출당했던 상황과 똑같이 박정희를 몰락시킨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부마항쟁은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었다. 흉물스런 변신을 통해 국민을 혼혹시키면서 장기집권해온 박정희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는 이승만을 축출한 4·19항쟁과 전두환 정권을 종식시킨 6월항쟁과 함께 한국반독재투쟁사에서 쟁취한 위대한 승리다.

### 3. 학생운동에서 시민항쟁으로 전환

부마항쟁이 갖는 의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시민이 동조하고 결합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이 주도했고 시위대의 주축을 이루었다. 4월항쟁 이후 학생과 더불어 일반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부마항쟁이 처음이다.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낸 경험은 큰 의미를 갖는 역사적 성과였다. 부마항쟁에서 이루어진 시민참여는 이후 한국민주화운동에서 보편적인 추세가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시민의 참여가 일반적이었고 1990년대부터는 운동을 학생보다는 민중이 주도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의 변곡점이 부마항쟁이었다. 특히 이듬해 광주항쟁이 시민 주도로 전개되었던 것은 부마항쟁의 전례와 무관하지 않다. 또 역대 민주화운동에서 정권 교체를 이끌어 낸 4월항쟁, 부마항쟁, 6월항쟁 등은 모두 시민이 결합한 때이다. 곧 반독재 투쟁에서 학생들만의 시위로 그칠 때는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반독재 군중시위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조직 대중이었다. 그들은 공권력의 폭력성에 대해 공분하면서 자발적으로 결합하였다. 민주화 시위는 폭력적인 공권력을 상대로 전개한 물리적이고 집단적인 항거였다. 계급갈등, 지역 대립, 종교 문제 등 특정한 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집단행

동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 시위는 맹목적 폭동으로 비화한 사례가 없다. 이 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 시위가 대부분 파괴적 폭동으로 번졌던 사례들과 크게 대비된다. 이렇듯 사전 계획이나 조직기반이 없으면서도 집권 세력의 폭력 진압을 상대로 수만 명 군중이 결집하여 투쟁하면서 난동이나 폭동으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공동체적 기반에 기인한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적 유대에 의해 별도의 조직적인 기반이 없어도 집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항쟁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다.

한국사회에 내재해 있던 개혁과 진보적 역량은 19세기 이래 농민항쟁과 독립운동을 거치면서 상당히 축적되었다. 하지만 이 역량은 남북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보안법으로 통제당 하였고 흑백논리의 이념 덕에 걸려 철저하게 탄압받고 파괴되었다. 개혁 진보 역량이 소진되었고 또 발본색원되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우익집단의 광기 어린 횡포에 직면했으면서도 역사에서 4·19 때까지 이렇다 할 저항을 접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60년 4·19항쟁기에 비로소 중고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항거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운동 기반이 붕괴되었거나 지하로 잠적한 상황에서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차렸던 희생의 상흔에서 어느 정도 빗겨나 있었던 청소년들이 앞장서 눈앞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정의감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그들을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혁명적인 사회변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독재 항거였다. 민중은 첨예한 저항의지와 희생을 무릅쓰 폭넓은 참여에도 불구하고 반공의식 국가보안법 대미관계 계급갈등 등 일련의 이념적 정체성에 관련되는 문제를 쟁점화 하는 데 소극적이고 회피적이었다. 이는 분단과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념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로 현장의 싸움에서는 승리했더라도 결말은 패배로 귀착되었고 한국사회의 진보적 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와 오류는 부마항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부마항쟁이 목표로 추구했던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과제였다. 민주화는 국민 모두의 요구이고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민주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용이하지 않았다. 10·26이 일어나자 한순간에 부마항쟁의 열기는 사라졌고 그 틈을 이용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권력 쟁탈의 기선 장악을 위해 12·12쿠데타를 자행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진영은 10·26부터 이듬해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두환의 권력장악에 방조했다. 그 여파로 광주시민들이 전두환일당의 계엄군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큰 희생을 치른 것이다.

부마항쟁은 10·26에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닌데도 사람들의 인식은 그 한계에 머물렀다. 4월 혁명은 1960년 경북고생들의 2·28 시위로부터 3·15마산 봉기를 거쳐 4·19 봉기에 이른 일련의 운동을 통해서 수행됐다. 또 1987년 2월 박종철 고문치사에 대한 항의시위로부터 6·10 시위 그리고 7,8,9월 노동자 투쟁을 거쳐 6월항쟁이 완성되었다. 부마항쟁도 10·26사태로 탄력을 얻어 확장되고 강화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만사휴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물론 항쟁의 의지와 목표는 약화되지 않고 서울의 봄을 거쳐 광주 5월항쟁으로 연속되었다. 만일 부마항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었더라면 10·26으로 항쟁 열

기는 더 확장되었을 것이고 이후 역사도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 4. 10·26에 대한 제언식

유신통치는 독재자 1인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반대세력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사형시켰다.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고 처벌받거나 운동권인사로 주목받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과 탄압은 끝이 없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공안기관의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다. 직장을 구하더라도 정부는 압력을 가하여 끝내는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게 했다. 누구도 박정희에 반대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일종의 거세정책이었다. 10·26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힌 인사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과는 박정희의 의도와 반대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저항운동을 통해 매번 새로운 반정부인사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유신하에서 반정부인사로 낙인찍힌 후 오롯이 반정부 운동에 매진하도록 유도되었다. 그렇게 축적된 민주인사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살해된 ‘궁정동만찬 사건’이 발생했고 직접적 사단은 부마항쟁이었다. 일반시민들도 동참한 부마항쟁에서 반정부시위가 예전과 달리 폭동에 가깝게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당국은 마산 시위군중이 총기(사제)를 사용했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곧 정부는 항쟁을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하려고 시도했다. 지난날 3·15 부정선거에 대한 마산시민들의 반대시위를 공산주의자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둘러씌었던 것과 같은 수법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뒷날 진실화해위의 조사에서 시위 중에 총기가 등장한 적이 없으며 당국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침 그보다 10여일 전 정부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이라는 도시게릴라식 민중봉기를 기도한 비밀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남민전 조직을 우연히 적발한 정부는 무슨 황재라도 한 것처럼 연일 과장보도하면서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게 했다. 세계적으로 1960, 70년대에는 도시 무장게릴라 활동이 빈번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되는 반정부 민주화시위에도 불구하고 무장세력에 의한 파괴 폭력적인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정부 발표대로라면 한국도 무장도시게릴라가 준동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한국도 도심에 무장세력이 거점을 확보하였고, 마침 그 발표 일주일 후 일어난 부마항쟁에서 시위대는 전에 없이 파괴 방화하는 폭동을 일으켰으며 그 뒤에 총기까지 등장하여 인명 살상을 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연일 언론을 통해 비밀 무장조직의 실체와 또 불순 세력에 의한 도심의 파괴적인 폭동 사태를 부풀려 강조했다. 이에 맞추어 박정희는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어)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또 차지철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학살했는데 우리가 100~200만 명쯤 희생시킨다고 무슨 문제이겠냐고 하면서 무자비한 살육작전도 감행할 수 있다고 했다.

부마항쟁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남민전과 관련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공안당국의 속성대로 남민전 조직과 부마항쟁을 엮어서 새로운 탄압책을 꾸미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곧 10·26 사건이 발생하자 그 공작들이 철회되었던 것이다.

정부가 부마항쟁을 전후해서 연일 위협적으로 내놓은 발표 내용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심

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일 한국정부가 유혈 탄압정책을 강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자칫 이란이나 월남과 같은 사태의 재현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든 불행한 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월남과 이란에서 독재정권을 비호해오다가 크게 낭패를 보았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상황이 그 나라들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더욱이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인권 외교를 표방해 왔으며 그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한국이었다. 카터는 박정희의 반민주적 억압통치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그해 6월 말 한국을 방문해 가진 회담에서도 그 문제로 박정희와 얼굴을 붉히며 심각하게 대립했다. 정보부장 김재규는 이 모든 논의와 상황분석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그 러함에도 10·26 사건을 김재규의 개인적 행위로 환원하여 파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또 그날 충격에는 여러 명의 중정직원들이 가담했는데 그들이 모두 현장의 한 두 마디 명령에 따라 이의 제기 없이 생명을 건 사건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극도의 폭압적인 유신독재로 여타의 기득권층조차도 존립이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1979년 예방혁명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고조된 가운데 10·26에 의해 박정희정권이 붕괴된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적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맷음말

오늘날 대중들은 보수언론의 여론조작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역사의 방향을 놓치고 있다. 진보적 담론은 보수언론의 위선적 행태에 휘둘려 여론형성의 주도권을 잃었다. 그 결과 지난날처럼 폭력에 의한 억압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에 의한 억압통치가 행해지고 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은 극우 폭력단체를 조직해 민중과 충돌을 유도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과거 백색 테러를 자행했던 것 같은 조직이 새롭게 재생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진보적 가치를 향해 폭력적 이념공세를 펼치면서 수구적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이룩한 민주항쟁의 성과들을 배척하고 기득권세력의 약탈적 속성을 감싸면서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민의 항거로 이미 오래전 축출된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열한 독재자에서 건국의 지도자로 옹립하는 만행을 역사의 심판을 외면한 채 꾀하고 있다. 유치하기 짜이 없는 시대착오적 행태인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실상 대학생 주도의 민주화운동 시대가 마감되었다. 동시에 학생운동권이 보여준 비판의식과 또 시위를 주도하던 투쟁력도 사라졌다. 그에 따라 각종 대중집회의 위력도 약화되고 영향력도 상실되었다. 그래서 부마항쟁에서 보여준 저항과 투쟁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계승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부마항쟁은 도무지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불가능해 보이던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다. 10·26사건이나 전두환 등의 신군부등장으로 부마항쟁의 성과와 의의가 축소되지는 않는다. 우리 역사는 부마항쟁으로 긴 독재의 세월에서 시간을 크게 단축해 빠져 나왔다. 항거와 투쟁으로 이룩하는 역사발전의 동력을 부마항쟁에서 생생히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제1부 발제 I>

## 부마항쟁과 주체

차성환(부산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 1. 들어가며

부마항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35년을 맞이한다. 오랜 세월 동안 망각의 그늘 속에 있던 부마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법률이 2013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부마항쟁에 대한 연구는 빈약했다. 법률의 시행과 함께 부마항쟁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부마항쟁의 주체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부마항쟁의 주체와 관련한 연구들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져왔지만 근래에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5·18항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2010년을 전후하여 발표된 김정한의 이론적 작업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sup>1)</sup> 김정한의 작업들은 5·18항쟁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부마항쟁의 연구에 있어서도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었다. 부마항쟁과 5·18항쟁은 시기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항쟁의 성격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두 항쟁의 연구 작업들은 다른 경우보다 더 긴밀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서 김정한의 작업들을 많이 참조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모든 항쟁이나 사회운동이 다 그렇지만 부마항쟁에서도 주체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항쟁의 주체를 밝힘으로써 항쟁의 목표, 성격, 양상 등 많은 것들이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2009년에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을 집필한 것도 부마항쟁의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 시도였다.<sup>2)</sup> 이 논문에서 필자는 부마항쟁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아니라 민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항쟁에 참여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6명의 주요 구술자(노동자)와 8명의 보조 구술자(대학생 등)의 구술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적 반독재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항쟁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정치적 판단과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sup>3)</sup>

다만 분석 대상이 된 구술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마항쟁을 합리적 민중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항쟁의 흐름을 이끌었던 민중항쟁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유보하였다(차성환, 2014: 287–292). 그리고 이후 더 많은 참여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잠정적 결론을 검증하려고 노력했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필자의 학위논문의 후속

1) 김정한의 작업들은 2013년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2) 필자의 논문은 2014년 『부마항쟁과 민중』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3) 선행 연구 혹은 분석들에서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의 모습은 크게 두 종류의 상(像)으로 묘사되었다. 하나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강력한 변혁 의지를 내포하는 존재로서의 민중상(民衆像)이며(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5), 다른 하나는 뚜렷한 정치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억압에 대한 반발, 자유에 대한 본능적 의지 등과 같은 무의식의 발현을 보여준 존재로서의 민중상이다(주대환, 1999: 34–38). 이런 두 가지 민중상은 모두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의 보편적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 앞서 언급한 민중들의 모습을 합리적 민중상이라고 명명했다(차성환, 2014: 74–75).

작업인 동시에 검증작업이기도 하다.

## 2. 항쟁 주체 연구의 방법론

김정한은 5·18항쟁의 주체문제를 논하면서 기준의 대부분의 주체 연구들이 항쟁(혹은 혁명, 봉기 등)에서 참여인구를 계층별로 분류하여 어떤 계층이 양적, 질적으로 더 많이 참여했는가를 따지는 방법론을 비판하고 있다. 즉 참여자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 계층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정치적 주체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운동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광주항쟁처럼 우발적이고 역사적 사건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타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그는 현대 정치철학 특히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주체성 이론에 기반하여 5·18항쟁의 주체문제에 접근한다. 그럴 때 항쟁 당시의 이데올로기 지형과 주체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은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김정한, 2013: 99–104).<sup>4)</sup>

필자는 이러한 시도를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도 계급계층론적 분석과 이데올로기 분석이 상호 배제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으로 기여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마항쟁과 5·18항쟁과 같은 항쟁을 연구하는데 있어 이데올로기 분석의 방법으로서 구술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구술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행위의 ‘본원적 사회성’에 의해 사회적인 것이 되며 개인사를 뛰어넘어 해당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이희영 2005: 129–133). 김정한 역시 5·18항쟁에서 시민군의 주체성을 탁월하게 형상화하는데 항쟁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다.

## 3. 부마항쟁의 주체와 이데올로기

부마항쟁의 주체가 ‘민중’이라고 하는 규정은 198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항쟁 기간과 그 직후에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을 ‘난동’, ‘소요’, ‘폭동’ 등으로 불렀고, 언론도 ‘시위’, ‘부마사태’ 등의 용어와 함께 ‘소요사태’, ‘학생소요사태’ 등의 용어로 보도했다. 이러한 정권과 언론의 명명에 반하여 학생들은 ‘항쟁’, ‘의거’, ‘봉기’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1980년 4월 19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4·19 제20선언문’에서 ‘10월 부마항쟁’이란 용어를 썼고, 5월 2일 서울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문’에서 ‘부마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신군부의 쿠데타, 5·18항쟁 이후 수년 간의 강요된 침묵 이후 1984년 10월 부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가 부마항쟁 기념식을 가지면서 「새벽 함성」이라는 기관지에서 ‘10·16 부·마 민중항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1985년 10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10월 부마민중항쟁사”라는 부제가 붙은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는 자료집을 배포했다. 그 이후로 부마항쟁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차성환 2014: 33–58).

4) 김정한은 협의의 사회운동과 대중봉기를 구분하고 이 둘을 포함한 광의의 사회운동을 상정한다. 이러한 구분은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대중봉기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데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부마항쟁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부마항쟁을 민주항쟁 혹은 민중항쟁으로 부르게 된 것은 학생운동의 해석이 이의 없이 수용된 결과이지만 1970, 80년대의 ‘민중론’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던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부마항쟁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규정은 부마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계급적 분석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부산대학교총학생회 1985; 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 1990).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참여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유신체제 전 기간에 걸쳐 야당, 재야세력, 지식인, 대학생들의 반유신 민주화투쟁이 이어졌지만 민중들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운동이나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집단을 제외하고 일반적 인식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이라는 과실 때문에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마치 지금 현재의 중국에서의 일당독재가 당연하게 우리의 눈에 받아들여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조정관 2009: 294). 그런 상황에서 민중들이 일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저항을 벌인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김정한도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sup>5)</sup>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나 대중 봉기에 대한 분석은 혁명모델에 대한 연구에서처럼 구조적 차원에서 원인과 조건을 살펴보고, 정세적 차원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후, 결과적 차원에서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에서는 운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데올로기 분석이 실질적으로 누락되기 쉽다. … 다시 말해서, 대중 봉기가 일어나는 맥락, 대중들이 투쟁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들의 요구와 열망 등은 사회적 구조 또는 구조의 담지자로서 행위자를 파악하는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 분석을 통해 적합하게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대중 봉기의 분석과 이데올로기 분석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함축한다(김정한 2013: 71–73).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정한은 5·18항쟁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대중 봉기의 이데올로기는 대항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이며, 둘째, 대항이데올로기는 대중 봉기의 ‘사후 효과’로서 출현한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5·18 항쟁의 이데올로기는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이 전제된 자유민주주의’이며 항쟁의 주체들이 그것을 집단적으로 현실화시키려 할 때 그것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거부하는 둘이킬 수 없이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반역으로 변모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김정한 2013: 73–89).

필자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부마항쟁 주체들의 이데올로기를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을 더욱 확실히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5) 이와 관련하여 배성준도 기존의 민중사학에서 주체의 문제가 계급분석으로 대체된 결과 민중이 어떻게 운동의 주체로 형성되었는가의 문제가 인식의 공백으로 남았음을 지적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서 톰슨과 구하가 ‘문화’라는 메개를 중시했던 것을 평가하면서도 “문화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주체 형성을 사고”할 것과 주체 형성을 특정한 정체에 규정된 ‘주체 효과’의 소멸과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역사문제연구소 민중시민 2013: 58–59).

#### 4.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의 이데올로기

그러면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참여하였는가? 이에 대해 필자는 2009년의 논문에서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은 자유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합리적 민중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합리적 민중상을 설정한 근거는 참여자들의 구술자료에 나타난 참여 동기와 참여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였다. 다만 그 사례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구술자의 숫자를 더 확대하여 합리적 민중이라는 가설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집, 채록한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필자가 2006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부마항쟁을 주제로 채록한 구술자는 모두 78명이다. 또한 부마항쟁과 연관된 주제로 채록한 구술자까지 합치면 105명이 된다. 그 가운데서 대학생, 지식인, 사회운동가 등을 제외하고 민중의 범주에 해당하는 구술자는 모두 27명이다. 필자는 그 중에서 당시의 정당(야당)이나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등과 관련이 있는 구술자 6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한 관련이 있는 구술자들은 당연히 당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이데올로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나 여타 어떤 형태의 사회운동과도 접촉하지 않았던 민중들의 사고와 참여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6명을 제외한 21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거기서 다시 2009년 논문에서 분석했던 6명을 제외하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구술한 총 15명의 구술자가 남게 된다. 이들의 인적사항을 분류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구술자의 인적 사항과 항쟁 관련성

연번	이름(성별)	출생연도	당시 직업(직장)	항쟁 참여도	피해 정도	현재 직업
1	양석우(남)	1952	자영업(광고기획사)	적극 참여	체포, 고문	상조회사 근무
2	최용국(남)	1953	자영업(운동구점)	적극 참여	없음	노동자생협이사장
3	이창근(남)	1961	고교생	적극 참여	체포, 고문	자영업
4	김세원(남)	1953	노동자(선팩회사)	적극 참여	체포, 실명	개인사업
5	전병진(남)	1950	노동자(금은방)	소극 참여	부상(두개골 힘몰)	자영업
6	김학근(남)	1957	방위병	적극 참여	없음	연구소장
7	박창근(남)	1960	재수생	소극 참여	체포, 졸도	대학교수
8	송관종(남)	1961	고교생	적극 참여	없음	연구소장
9	신태원(남)	1950	노동자(완구점)	목격, 지원	없음	자영업
10	최운수(남)	1952	노동자(세탁소)	목격	선배 실종 의혹	자영업

11	황상윤(남)	1956	노동자(제조업)	목격	체포, 고문	개인사업
12	한영식(남)	1953	자영업	목격	체포, 고문	개인사업
13	김종길(남)	1956	노동자(제조업)	계엄군에 항의	부상(장파열 등)	상업
14	박승민(남)	1959	노동자(제조업)	목격	체포, 고문	노동자
15	류재근(남)	1962	고교생	계엄군에게 폭행 당함	부상	개인사업

이상의 전체 구술자 가운데 연번 1번부터 8번까지의 8명은 부마항쟁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참여한 사람들이다. 반면 9번부터 15번까지의 7명은 부마항쟁에서 참여하지는 않고 현장을 목격했거나 경찰이나 계엄군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일방적 피해자)이다.

이 두 부류의 구술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부마항쟁에 참여할 당시 유신체제 혹은 박정희 정부에 대해 어떤 주관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항쟁에 참여한 그룹의 사람들은 부마항쟁의 참여 동기와 관련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2의 내용은 항쟁 참여 그룹들의 구술 내용 중 당시의 사회경제적 인식, 정치적 인식, 항쟁 참여의 직접 계기에 대한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2) 항쟁 참여 구술자들의 인식과 참여 계기

연번	이름	사회경제적 인식	정치적 인식	항쟁 참여의 직접 계기
1	양석우	당시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크다고 생각함	장기집권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집권자가 독선, 독재적이라고 생각함	공권력의 과잉 진압(시위대를 짐승처럼 취급)
2	최용국	사회가 부조리, 불합리하다고 느끼(관의 투표 강요, 학력 차별, 경찰의 부패 등)	정치에 관심은 없었으나 당시 정치가 독재적, 권위주의적이라 느끼	공권력의 과잉 진압(진압 경찰의 폭력으로 여학생 실신 목격)
3	이창곤	상인인 부친의 세금에 대한 불만은 들었으나 본인의 문제 의식은 없었음	가정교사의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 행동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구체성 없음	일상이 깨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욕망
4	김세원	당시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크다는 느낌을 가졌음	유신체제 출범 당시부터 독재라고 생각. 관, 경찰의 위압적 성격에 두려움을 느낌	김영삼 종재 제명에 반감을 느낌
5	전명진	세법(부·가·가·치·세) 등 모든 것이 강제적으로 진행됨. 장발 단속에 여러번 걸려 삭발당함	박대통령이 너무 독재적이고 장기집권을 한다고 생각함	시위 상황을 지켜보고 싶어 거리로 나섬

6	김한근	항쟁 당시 종교단체의 집회도 금하는데 반감을 느낌	유신체제에 대한 박연한 반감은 있었으나 행동까지 할 상태는 아님	계엄군의 과잉 진압
7	박창근		유신헌법이 독재적이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	호기심으로 시위 참가
8	송관종		유신체제가 너무 억압적이며 민주주의는 자기 희생 없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정치적 인식에 따른 자발적 참여

이 그룹의 사람들 8명 가운데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은 5명이며, 3명은 그런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 반감은 있었으나 비판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던 3명의 직업은 방위병, 재수생, 고교생으로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적 의식이 성숙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자극되어 참여한 사람이 1명이며 호기심에 이끌려 참여한 사람이 2명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다수가 유신체제가 독재라고 인식했으며 따라서 정치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구술을 통해 살펴볼 때, 이들은 유신체제가 1인의 장기집권을 유지하는 독재체제이며,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자, 자영업자, 고교생들인 이들은 명백히 유신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한국적 민주주의’가 허구라고 느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부마항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시위 현장 주변에 있다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일방적 피해자’로 지칭)의 경우를 살펴보자.

표3의 내용은 일방적 피해자 그룹의 구술 내용 중 당시의 사회경제적 인식, 정치적 인식, 항쟁 당시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3) 일방적 피해자들의 인식과 상황

연번	이름	사회경제적 인식	정치적 인식	항쟁 당시의 행위, 상황
9	신태원	박대통령이 경제 전선에 공이 크다고 생각함	박대통령이 장기집권(유신)만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랫 사람들이 문제였다.	진압 경찰에 쫓긴 학생들을 숨겨줌
10	최운수	먹고 살기에 바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음	정치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는 선매와 사내 나갔다가 선매가 계엄군에 연행 후 행방이 묘연
11	황상윤	기술자로서 높은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다.	당시 정부나 정치에 대해 불만이 없었다.	시위 구경 중 연행되어 화물소 방화범으로 몰려 고문, 재판 후 실형

12	한영식	먹고 살기에 바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음	박대통령이 장기 집권한다는 생각은 했으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귀가 길에 우연히 시위대와 조우 중 연행되어 고문, 재판 후 석방
13	김종길	먹고 살기에 바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음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계엄군의 교통 통제에 항의하다 폭행으로 장파열, 수술 후 고생
14	박승민	먹고 살기에 바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음	박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했으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시위 구경을 나갔다가 경찰에 연행, 고문, 재판 후 석방
15	류재근		박정희가 싫고 두려웠으나 정치에 관심 없었다.	영화관람 갔다가 강제로 중단 당해 거리로 나온 후 계엄군에게 폭행 당함

연번 9번에서 15번까지의 7명은 부마항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면서 부당하게 연행되어 고초를 겪은 일방적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대개 생업에 바빠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희박하다. 일부는 유신체제가 독재적이라고 생각하며 두렵고 싫은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정치 자체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이상 두 그룹을 비교하면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은 일부 호기심이나 군중심리에 이끌려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는 평소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반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의식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필자의 2008년 논문의 결론과 이후의 구술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같이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임을 확인할 수 있다.

## 5. 부마항쟁에서 나타난 행위양식

그러면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구술에서 나타난 항쟁 당시의 상황과 행위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4) 항쟁 참여 구술자들의 행위양식

연번	이름	항쟁 당시 상황과 행동
1	양석우	시위, 농성에 참여했다가 경찰서 공격에 가세하던 중 포위되어 체포
2	최용국	평소 알고 지내던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계속하던 중 계엄군의 진입을 목격하고 인근 주택으로 피신하여 체포 모면
3	이창근	친구와 함께 야간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적을 받아 가족 지붕을 타고 넘어 피신하다가 체포됨

4	김세원	퇴근 길에 시위대에 참여, 시위 중 경찰에 체포되어 실명(失明)에 이음
5	전병진	퇴근 길에 서면로터리에서 계엄군과 시민의 대치 상황 속에서 계엄군의 곤봉 가격으로 머리를 다쳐 수술 받음
6	김한근	시위대에 합류, 파출소 공격 및 방화에 참가했으나 체포되지 않음
7	박창근	우연히 시위대와 조우하여 호기심에서 시위에 합류했다가 체포
8	송관종	시위대에 합류, 참가했으나 체포되지 않음

위 표4에서 보는 것처럼 구술자들은 경찰서나 파출소를 공격 혹은 방화하는데 참가하는 등 격렬한 저항도 있지만 주로 시위에 참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행위양식이었다. 구술에서 나타난 구술자들의 행위양식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혁명적 민중상이나 본능적 민중상 양자보다 거리가 있었다. 구술자들은 혁명적 민중상이 묘사한 것처럼 혁명적 민중의식에 충만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본능적 민중상이 묘사한 것처럼 정치적 의식이 없이 본능적 저항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혁명적 민중상이나 본능적 민중상 모두 항쟁 당시 민중들의 격렬한 행위양식의 표출을 한쪽은 지나치게 과장하고 한쪽은 지나치게 격하하여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혁명적 민중상으로 묘사한 쪽은 민중운동의 당위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능적 민중상은 민중의 정치의식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러나 다시한번 말하자면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의 다수는 혁명적 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저급한 저항적 본능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허구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유신정권의 기만성을 깨뚫어 볼 줄 아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식을 갖춘 민중들이었다. 그들은 유신체제의 감시망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를 통해 지속된 노동자, 학생, 지식인들의 생존권 투쟁, 민주화 투쟁을 지켜보면서 유신체제의 본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성숙시켜 온 사람들이었다. 부마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은 비록 평소에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행동할 수 있는 주관적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1978년 12월의 총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득표율이 1.1% 앞섰던 것은 이러한 민중들의 표심이 움직여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이것은 유신체제에 대해 민심이 이반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적 위기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제2차 오일쇼크로 촉발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불황과 함께 유신의 명분 가운데 하나였던 중화학공업의 과잉증복투자가 빚어낸 위기는 경제성장을 앞세운 유신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불황 등으로 자영업자 등 중간층과 노동자, 빈민층의 불만도 커져갔다. 경제적 불만은 정치적 불만을 고조시키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거기에 1979년 5월 신민당 전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총재 김영삼은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면서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경제적 위기와 그에 따른 불만, 그리고 야당의 새로운 지도력의 등장은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에 적합한 조건들을 형성해 주었다. 그리고 그런 저항의 선봉에 선 것은 학생들이었다. 이전에 민중들은 학생들의 반유신투쟁을 방관했지만

1979년 10월에는 적극 호응할 뿐 아니라 선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6. ‘민중’ 개념에 대한 논란

그런데 김정한은 기존에 부마항쟁이나 5·18항쟁 등에서 사용하던 ‘민중’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sup>6)</sup> 즉 1980년대 이래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편으로 복지체제를 해체시키며 노동력의 재생산을 관리하는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 자본주의 축적양식을 금융투기로 이동시켜 국가와 자본에 포섭되지 못하는 수 많은 ‘잉여인간’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치안과 행정에서 방치된 시민들과 아예 형식적 시민권조차 없는 이주민과 난민들 그리고 생산관계 외부에 배제된 실업자들이 세계적으로 범람한 상황에서 그에 대항하는 주체성으로서 국민(민족), 시민, 민중(인민), 계급 등의 범주들이 근본적으로 의문시된다는 것이다(김정한 2013: 99–100). 또한 최장집의 ‘민중’ 개념을 인용하면서 ‘민중’이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비판한다(김정한 2013: 186).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민중’ 개념이 세계화시대에 더 이상 주체성의 내용을 담보할 수 없는 개념이 되었다는 비판이다.

사실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운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민중’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민주화를 목표로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었던 민중운동은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에 두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는 중산층적 시민운동으로 분화되었고(최장집 2009, 181) ‘민중’이란 용어도 점차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조정환은 산업노동자가 중심이 된 민중의 시대는 1987년을 정점으로 저물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를 끝으로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자본주의는 1990년대부터 대내적으로는 첨단산업과 통신산업으로 산업을 재구조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흐름에 동참하는데 이는 산업노동의 선도 하에서 일어난 민중의 봉기와 반란에 대응하는 자본의 반격방식이었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이 정규직, 대기업, 남성이라는 특권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스스로 권력에 동화되어 민중에 대한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했다. 헤게모니 집단이 없을 때 근대 민중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산업노동의 헤게모니 상실은 곧바로 민중의 해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6) ‘민중’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가와 연구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했지만 필자는 최장집의 정의가 적절하다고 여겨 이를 소개한다. 최장집은 계급 개념과 연관하여 민중을 범주화하면서 민중은 계급1과 계급2 사이에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재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수준에서 범주화될 수 있는 사회집단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계급1은 생산의 기본적인 사회관계 내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이며, 계급2는 사회적, 정치적 수준에서 계급의식을 갖는 실천의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계급을 말한다. 최장집에게 민중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수준에서 인식된다. ① 민중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노동분업 내에서 피지배적 지위에 객관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사회집단이다. 노동자, 농민, 하층 서민계층을 포함하는 경제적 수준에서의 민중을 뜻한다. ② 민중은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국가의 강권력에 의해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정치참여가 제한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 즉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집단으로 정치적 수준에서의 민중이다. ③ 민중은 제국주의적 외세의 지배와 그 힘의 외교화로서의 문단 하에서 물질적, 정신적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회집단이다. 이는 세계체제와 남북분단의 수준에서의 민중을 뜻한다. ④ 민중은 언술의 수준에서 존재한다. 한국사회가 계급이론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에, 사회계급 간 경계의 포괄성, 포섭성, 유도성 때문에, 계급적 언술이 역할의 대상이기 때문에 민중이라는 언술의 형성은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다. 이상의 4가지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①의 요소다. 최장집에 의하면 민중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데 포괄적인 까닭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까닭은 실천적으로 역사와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하고 참여하는 행위주체이기 때문이다(최장집 1993: 384–386).

조정환은 이러한 민중의 해체 위에 다중(多衆, multitude)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조정환 2007: 83–102).

김원은 부마항쟁의 주체를 ‘도시하층민’으로 규정하면서 ‘도시하층민’을 대중이나 민중이라고 단일하게 통합된 주체로 명명하는 문제설정 자체가 매우 이질적이고 상이한 주체들을 ‘타자’로 남겨두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의식적 욕망’의 산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원 2005: 30–33).

이처럼 ‘민중’ 개념이 비판받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 단일하지 않은 구성을 가진 피지 배집단을 단일한 혹은 동질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셋째, 이 개념이 일국적 범위의 국민국가 내에서 적용되던 개념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에 국가와 자본에서 배제된 광범위한 사람들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넷째로, 새롭게 등장한 개인주의화되고 다양화된 집단을 표현하기에 이전의 ‘민중’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물론 이런 비판들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중’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은 무엇일까? 많은 대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진경은 기존의 ‘계급’ 개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면서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대중’이란 개념을 매개로 운동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중’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이진경은 이 개념을 ‘흐름’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이진경 2012). 조정환은 이미 본대로 네그리와 하트가 개념화한 ‘다중’을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하면서(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8) 5·18항쟁을 다중의 봉기로, 항쟁의 주체를 초인이란 개념으로 표현한다(조정환 2010: 77). 김정한은 지젝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5·18항쟁의 주체(시민군)를 현존하는 상징적 질서를 거부하고 사라짐으로써 상징계의 좌표를 변동시키는 ‘사라지는 매개자’로 분석했다. 하지만 김정한은 현대정치철학에서 나타난 여러 개념들 즉 다중(multitude), 유목민(nomad), 실재의 주체(subject of the real) 등이 주체성의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도록 설명력을 발휘하는 상황도 아님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김정한 2013: 99–129). 새롭게 제출되는 개념들로 부마항쟁이나 5·18항쟁을 재해석하는 것은 항쟁 연구를 풍부하고 깊이 있게 하는 계기가 되므로 권장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아직 없다면 ‘민중’이란 개념을 쉽게 폐기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닐까?

필자는 ‘민중’이란 개념도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내포와 외연이 심화, 확장,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재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민중’ 개념이 비판받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민중’ 개념이 단일하지 않은 구성을 가진 피지배집단을 단일한 혹은 동질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는 비판이다. 최장집의 정의를 따르면 ‘민중’은 자본, 국가, 외세의 지배를 받는 다양한 계급, 계층, 사회집단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중’의 정의에 충실한 연구라면 ‘민중’ 개념 속에 포괄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체들을 구분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그 차이를 밝혀내는 분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중’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려한 차이들을 밝히기 위해 계급, 계층, 집단, 개인 등 적절한 개념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민중’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민중’ 개념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계급1과 계급2 가운데서 주로 계급2의 개념에 집중되는 비판일 것이다. 즉 ‘민중’ 개념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계급의식 혹은 정치의식의 존재 여부이기 때문에 주관적 범주를 명확하게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음을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민중’ 개념의 강점일 수도 있다. ‘민중’이 실천적으로 역사와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하고 참여하는 행위주체라는 규정은 실천적인 합의를 강하게 내포함으로써 역동성을 갖는 개념인 것이다.

셋째, 이 개념이 일국적 범위의 국민국가 내에서 적용되던 개념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자본에서 배제된 광범위한 사람들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민중’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새롭게 양산되는 ‘배제된 집단’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당연히 포함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또한 국민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계화 시대의 조건을 반영하여 ‘민중’ 개념의 조건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넷째로, 새롭게 등장한 개인주의화되고 다양화된 집단을 표현하기에 이전의 ‘민중’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이전의 ‘민중’ 개념에는 집단주의적 뉴앙스가 강하다. 따라서 ‘민중’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계급 등 집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운동론이나 집행운동론의 차원에서 ‘민중’의 개념은 얼마든지 새롭게 재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오랜 역사를 갖는 고유의 개념을 되살려내는 것이 합의되지 않는 생소한 개념을 쓰는 것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sup>7)</sup>

‘민중’과 ‘민중사’에 대한 논의는 근래 역사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에 모인 일단의 역사학자들은 ‘과학적·변혁적 민중론’에 기초한 1980년대의 ‘민중사학’의 성과를 계승하되 그 한계를 넘어서 변화된 현실에 조응하여 ‘새로운 민중사’를 정립하려 한다. 이들이 구상하는 새로운 ‘민중상’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중은 투쟁하는 주체(운동적 주체)에 앞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생활자(일상적 주체) 이므로 일상적 주체의 측면을 기반으로 운동적 주체의 측면까지 확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민중은 특정한 계급연합으로 실체화되는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과 정체성을 내포한 다성적(多聲的) 주체이다. 민중은 단지 다수자로서 존재·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다수성에 의해서도 배제·소외되는 소수자(마이너리티)를 포함한다. 따라서 단일하고 통일된 민중의 의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도 공명하는 올림과 민중 내부에서 부딪히고 배제되는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민중은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압되거나 규정받고 그에 항상적으로 저항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배와 저항 또는 종속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담지하고 있는 모순적 주체이다. 민중은 지배의 영역에서 독립된 순수한 주체가 아니며, 그렇다고 지배에 일방적으로 규정되지도 않는, 그래서 종속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순적 주체인 것이다.

7) 가까운 시대만 보더라도 민중개념은 갑오농민전쟁 당시부터 사용되어왔다. 1894년 정월, 백산의 호남창의대장소에서 말의한 격문에는 “... 양반과 호강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하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작으로 일어나라. ...”(오지영 『동학사』 : 112)라고 사용한다. (김용섭, 「전봉준 공초의 분석」, 2001. 『한국근대농업사연구Ⅲ』, 지식산업사.에서 재인용)

넷째, 민중은 근대프로젝트로 수렴되는 근대적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를 상대화할 수 있는 방법적 매개이다. 민중은 일국 단위의 변혁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들고 때로는 그것을 무화시키는 트랜스내셔널한 주체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존을 지켜가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근대적·반근대적·비근대적 선택을 해 나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민중상’에 기초하여 이들의 ‘민중’ 인식은 과거 민중운동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전위주의, 엘리트주의를 지양하고 민중은 지식인에 의해 지도받아야 하는 존재도 아니고 지식인과 합치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닌 독자적인 인식과 감각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 위에 서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2013: 8-22).

## 7. 1970년대의 ‘민중주의’

김정한은 1970년대에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대항이데올로기로서 ‘민중주의’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민중주의’는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나타난 인간소외와 빈부격차에 비판적인 해방신학, 민중신학과 결합하여 등장한 민중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민중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가난한 사회경제적 기층집단을 진보사관에 입각해 역사 발전의 주체로 상정하는 개념이며 민중은 사회의 온갖 모순을 삶으로 경험하며 자생적으로 민중의식을 체득하는 존재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민중들이 진보적인 민중의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빈번히 민중의 현실적 모습에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민중의식을 지닌 진보적 민중’이 역사적 실체라 기보다 지식인들에 의해 ‘발명된 공동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김정한 2013: 178-186).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민중’이라는 개념이 지식인들에 의해 발명된 개념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타의 개념도 그런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계급, 인민, 대중, 국민, 다중 등 근대 이래 다수의 피지 배집단을 지칭하는 모든 개념들이 지식인들에 의해 발명된 개념이고 ‘상상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음은 재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70년대의 다양한 민중론 – 민중사학, 민중신학, 분단사회학, 민중경제론, 민중문화 등 –은 1960년대의 비(非)혁명적 인식 단계를 뛰어넘어 1980년대의 혁명적 인식 단계로 가는 과도기의 이론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이창연 2012: 26).

둘째,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민중의식’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논지를 따라 이해하자면 그 실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자유민주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이기도 하므로) 사회주의 같은 ‘혁명적, 변혁적’ 사상, 의식이어야 진보적 민중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김정한 2013: 178-186). 하지만 1970년대의 지식인들이 민중의식, 민중의 진보성을 상상할 때 과연 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었던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1970년대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식인이라면 당시의 민중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1970년대 노동운동의 가장 선진적이고, 투쟁적인 부분이었던 민주노조운동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수준이었던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그렇다면 당시 민중들의 의식수준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당시의 정치지형으로 말하자면 일단의 재야인사, 지식인, 대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항이데올로기로 삼아 독재를 비판하고, 유신정권과 그 나팔수로 전락한 어용언론은 이들을 국가적 현실을 외면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며 국민을 선동하는 악의적, 폭력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민중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침묵하는 대다수 민중들의 의식은 어떠하였던가? 여기서 다양한 계급, 계층으로 이루어진 민중 일반의 의식을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들을 민중 구성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한다면 노동자들의 의식세계에 대해서는 사회학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의하면 1970년대의 특히 남성노동자들의 상(像)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1970년대의 남성노동자들은 유교적 전통에 따른 남성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여성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조운동을 부정적으로 보았고(전순옥 2004: 366–368) 종종 회사에 매수된 억압자로 등장했으며(구해근 2002: 131–132) 가부장제 전통과 군대 경험 등으로 인해 권위주의적 인성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정치의식은 분절적이고 지역주의에 매몰되었으며 민주주의의 문제를 자신들의 노동조건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해석 틀이나 언어를 갖지 못했다(신흥영 2006: 25–38).

이처럼 선행연구는 이 시기 다수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저급했고 ‘자유민주주의’적 의식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교적 집단적 의식을 갖기 쉬운 노동자층이 이렇다면 다른 계층의 민중들은 그보다 더 열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부마항쟁에서 나타난 광범한 민중들의 참여와 저항을 해명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 가운데 다수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었고 유신정권의 폭압정치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내장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학생들의 구호에 공감했던 것이다. 요컨대 당시의 ‘민중’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었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독재이데올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민중’들은 충분히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8.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이데올로기 지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과 5·18항쟁 주체들은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기반 위에서 항쟁에 참여한 점에서 동일하다 하겠다. 그런데 부마항쟁이 일어났던 1979년 10월의 시점에서 참여 주체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과연 지배 이데올로기인가 하는 점에서 필자는 김정한과 달리 이해하고 있다.

유신체제 시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인 동시에 대항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일면 동의하지만 일면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유신정권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한국적 민주주의’는 물론 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적 (특수한) 현실에 적용한 이론’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민중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사실상 ‘한국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민중들에게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느껴지기 어려웠다. 딥

론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했더라도 현실은 ‘국가주의’, ‘안보군사주의’, ‘반공파시즘’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집단망탈리테 또한 그러한 것이었으므로 민중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대항이데올로기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보여진다.

김정한은 유신 시기와 5·18항쟁 시기 모두 1970년대의 이데올로기 지형의 연장선상에서 항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김정한 2013: 187) 부마항쟁과 10·26정변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부마항쟁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성격보다는 대항이데올로기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배층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학교 교육, 새마을 교육, 언론매체 등 가능한 모든 이데올로기 기구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선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야당과 재야세력, 학생운동세력 등은 이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부마항쟁과 10·26정변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적 민주화가 대세를 이루었다. ‘10월 유신’과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변하는 언설은 일시에 자취를 감추었다. 최규하 정부조차 일정한 보수성을 드러내면서도 민주화를 당연한 정치일정으로 설정하고 약속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신군부의 5·17쿠데타 이전까지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였고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이었다.

김정한은 1970년대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냉전시대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거의 실존하지 않았고, 대부분 반공과 안보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법적·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만을 ‘파행’, ‘예외’, ‘일탈’로 간단히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김정한 2013: 179).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설정한 나머지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가 이상적 기준에 미달하므로 ‘한국적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예외나 일탈은 아니라는 주장이 된다.

하지만 ‘한국적 민주주의’론에 기초한 유신체제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일탈과도 질적으로 다른,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부정이고 공개적인 권위주의독재체제로의 전환이다. 냉전 시대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유신체제처럼 국민의 기본권조차 완전히 박탈하는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sup>8)</sup>

그렇기 때문에 1980년 5월에 광주의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항쟁에 참여했지만,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항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항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8) 강정인에 의하면 한국적 민주주의는 박정희가 1963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밝힌 한국정치에 대한 초기 구상이 10년에 걸친 통치경험과 함께 점진적으로 체계화되어 실현에 도달한 점점으로 평가 한다. 박정희는 “5·16 민족혁명”을 “주체의식의 혁립혁명”, “근대화혁명”, “산업혁명”, “민족의 중흥 창업혁명” 등 다차원적 혁명으로 정의하면서 그 혁명은 “성해진 시한”이 없어서 “제3공화국이 수립만으로 혁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며,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대대로 계승되는 “민족의 영구혁명”이라고 선언했는데 이 선언은 ‘권력에 의 의지’와 결합될 경우, 정확히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강정인 2014: 228-229).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 9. 맷음말

이 글은 부마항쟁의 주체를 ‘민중’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된 필자의 2009년 논문의 후속편으로 써어진 것이다. 그 분석 결과는 2009년 논문의 잠정적 결론을 재확인해 주었다.

다른 한편 5·18항쟁을 분석한 김정한의 탁월한 작업은 항쟁의 주체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부마항쟁의 연구에도 많은 참조가 되었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항쟁의 주체문제에 접근하는 김정한의 문제의식은 2008년에 구술 자료를 분석한 필자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하지만 1970-80년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민중’ 개념의 사용 여부나 1970년대의 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부마항쟁과 5·18항쟁은 동시대의 가장 근접한 시간대에 위치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매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유신체제의 붕괴와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정치변동으로 인해 다른 측면도 적지 않다.

이후 양대 항쟁의 비교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1990. 『부마에서 광주까지』 . 도서출판 셈불.
- 강정인. 2004.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 아카넷.
- 강정인. 2014. 『한국현대정치사상과 박정희』 . 아카넷.
- 구해근. 2002.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 창작과 비평사.
- 김영범. 2010. 『민중의 귀환, 기억의 호출』 . 한국학술정보.
- 김원. 2005.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 이매진.
- 김정한. 2013. 『1980 대충봉기의 민주주의』 . 소명출판.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워옴. 2013.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 – 부산편 1. 2』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박재순. 2013. 『민중신학에서 씨알사상으로』 . 한울아카데미.
- 서중석·김상봉·정태석·한홍구·이은진·조정관. 2009.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 신평영. 2006. “노동자계급의 생활문화와 정치의식” 이종구 외. 『1960-70년대 한국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 한울아카데미.
-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2013.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 역사비평사.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8. 『다중』 . 세종서적.
- 이진경. 2012. 『대중과 흐름』 . 그린비.
- 이창언. 2012. “유신체제 하 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과 저항의 관계”. 『역사연구』 제23호.
- 이행봉 외. 2003.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 민주공원.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 전순옥. 2004.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 한겨레신문사.
- 조정관. 2009.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서중석·김상봉·정태석·한홍구·이은진·조정관. 『부 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 조정환. 2007.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 . 갈무리.
- 조정환. 2010. 『공통도시-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 갈무리.
- 차성환. 2012. “유신체제와 부마항쟁”. 『역사연구』 제23호.
- 차성환. 2014. 『부마항쟁과 민중』 . 한국학술정보.
-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 한길사.
- 최장집. 2009.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 돌베개

## 부마항쟁과 민주화운동

이은진 (경남대 교수, 사회학;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이사)

### I. 서론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지 35년이 지났다. 당시의 참여 주역들이 20세 정도로 추정하면, 55세가 된 셈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의 주역이라기 보다는 지도자 급이나, 아니면 무대의 뒷면으로 물러나고 있는 시기이다. 즉 사회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사건이 알려지고 해석되는 시기는 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보상 심의가 시작되는 것도 흥미롭다. 즉 참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역사적 평가는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보상으로 참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리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역사적 평가과정 자체를 역사적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희생자 보상심의위의 구성은 한국 민주화 과정의 한 평가적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 세대 (30년)이 지난 다음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만큼 당시의 참여자나 참여자가 속해 있던 사회적 평가에 근거한 역사서술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을 평가하는 경향이 더욱 농후해 질 것이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피해자 보상으로 축소시켜 참여자들의 역사적 발언권은 물질적 보상과 사적인 체험으로 환원시켜, 사건의 공적 의미는 약화되어 해석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적어도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향해야 목적이라고 합의한다면,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 그리고 공공의 번영을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1979년의 10월 16~20일의 부마 민중항쟁이 갖는 의미를 현재의 시점에 맞추어서라도 명확하게 재조명할 필요는 오히려 커진다고 볼수 있다. 즉 당시의 사건이 추구하던 역사의 목표가 이루어졌거나,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희생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고 믿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명목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고, 공식행사나 공적 절차에서는 민주주의 구호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민주주의적 요소가 너무도 깊숙이 침투하여, 도대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에 그렇다.

당시 부마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민주의 역사적 지향은 유신독재를 이끌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이어진 유신체제의 종말, 1980년 민주화의 봄과 대통령 간접 선거로 또 다른 군부독재의 시작,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27년 만에 복귀, 1991년 지방선거의 실시 등의 역사적 사건의 전개로 구현되었다. 부마항쟁이 단독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마항쟁을 빼놓고는 이후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마항쟁이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점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대통령을 살해한 사유를 진술한 내용 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마항쟁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김재규의 해결책이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 사건으로 나타난 점을 해석해 본다면, 부마항쟁이 박정희 유신체제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증명된다. 부마항쟁이 유신의 종말을 시위로서 표현했고 이를 김재규가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와 이어서 유신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마항쟁이라는 사건이 단독으로 기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사건의 원인적 계기를 유발하였다는 점으로 해석한다. 역사적 사건이란 부수히 많은 사건들이 인과적 계기적 연관고리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마항쟁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유신의 종말을 가져온 원천적 힘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부마항쟁은 물론 앞선 사건들인, 정치적 시민적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현상, 이에 대한 기존 정치적 제도권의 반향과 동시에 정치적 의사분출의 차단, 국민 피치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영향력 회복을 위한 시위 (부마항쟁), 이에 대한 유신체제 박정희 국가의 탄압, 지배층 내부의 분열과 박정희 대통령 살해, 이후 기득권층의 반동과 반동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저항, 군부의 개입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이러한 양상 자체는 민주적 진전을 이루는 세계사적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순서이다. 역사의 전개에서 중요한 점은, 반동의 지속과 이에 대한 저항의 지속이 가능한가일 뿐이다. 즉 국민적 저항의 지속성, 강고성, 개인성, 유연성이 문제일 것이다. 지배층의 반응이나, 지배 집단 불력의 반응은 대체로 역사적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었고, 이는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즉 우리의 경우에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 정치군인들의 군부내 항명, 정치군인들의 광주 저항진압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합집산, 기회주의적 태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피치자들은 저배집단, 기존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환상을 갖고 대하고 있으나, 역사에서는 환상은 환상으로 그치고 배신당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프랑스 혁명이 하나의 시위이고, 곧바로, 루이 16세 부부의 죽음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듯이, 하나의 시위에게 모든 역사적 짐을 맡기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이럴 경우 중요한 점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 어떤 위치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이다.

개개의 사건을 놓고 게임에서 경합하듯이, 어떤 사건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아니면, 그것이 없었으면 민주화가 불가능했다는 라는 해석은 역사적 사건의 진행을 놓고 보면 천박한 역사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보편적 역사해석을 방해하고, 현재의 역사진행을 가로막는다.

## II. 역사과정로서의 부마항쟁

이에 1979년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역사적 흐름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부마항쟁이 갖는 의미, 또는 역사적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 옳을 방식일 것이다. 부마항쟁의 특징은 일단 중앙정부의 지배방침에 대해 기층민들이 저항하였고, 이를 다시 중앙 국가체제가 억압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지역성을 무시하고는 저항의 발단과 진행, 저항의 진압을 위한 국가 체제의 동원 등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김재규는 물론 2가지 중요한 논리를 전개한다. (1) 부마의 항쟁이 부마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논리, 그리고 (2) 부마의 항쟁은 지역성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저항의 성격을 지니므로, 민중항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적인 항쟁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대사관의 부마 보고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격을 단정지었다. 김재규와 미국대사관의 보고서가 일치한 것은 아마도, 사전의 교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보기관의 분석이 관찰에 의거하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사실을 통한 추론적 방식의 동일함에 근거할 것이다. 일단 김재규와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는 관찰에 의존하였음을 자술하고 있다. 그리고 발간된 자료에는 제출된 바 없지만, 정보기관의 속성상, 그 외의 일상적인 사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한 직후부터, 미국의 연관설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결론이 나오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에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당해 죽었지만, 이에 대한 사실 조차 정부 내부의 문서가 거의 영구적인 비밀로 분류될 상황에 있기에, 우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 즉 최근에 미국의 한 교수가 미국 CIA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정보의 제한된 공개 결정에 대해 승소하여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역시 언제 공개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므로, 단정적인 사실 파악과 사실을 기초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적이 정확할 것이다. 다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카터 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이 불편한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미국 대사관의 자료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불편한 관계가 암시나, 사주에 까지 나아갔는냐의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이기는 하다. 사주란 명백한 지시-수행의 관계를 의미하지만, 암시는 김재규가 어떻게 느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나, 주위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참조총장 등의 당일 언행이나, 행동의 궤적을 보면, 적극적 동조내지 적극적 저항은 분명히 아닐지라도, 소극적 저항과 소극적 동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전두환의 12/12 수사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 다만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태도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을 의미하므로,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은 역사적 사건의 전개는 처음부터 기획되거나 의도된 것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들의 태도나 행동이 바뀌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로운 역사적 사건의 전개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 행동이다. 따라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나, 비서실장의 행동거지에 대해서 활가활부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였으냐의 문제이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은 아닐 것이다. 즉 역사적 인식을 이들에게 요구할 근거도 없고,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를 상례가 아니기에 그렇다.

다만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한 동기와 거사 준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거사 자체의 충동적 거행이라는 사실, 물론 본인은 과거에도 이러한 거사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스스로 영웅시하는 행동으로 보이고, 조직을 장악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영웅적 거사를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만일 김재규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희생만을 전제로 거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애초에 스스로를 희생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전을 위해, 아니면 민중의 고통을 완화하

기 위해 거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장은 김재규가 적어도 육군참모총장이나, 또는 더 나아가 군, 그리고 비서실을 포함한 내각까지도 자신의 거사가 확정되면, 대세에 소극적으로 순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것, 역시, 대세에 순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암시적 배경이 필요하다. 이때 등장 가능한 아우라가 미국, 또는 소극적으로 미국의 핵심 권력과의 교감일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현단계로서는 겸중이 불가능하다.

### III. 사건의 패러메타로서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

인과관계의 논의에서는 구조적, 배경적, 계기적, 상황적,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부마항쟁의 발발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구조, 배경, 계기, 상황, 직접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의 미공개, 공개된 사실에 대한 해석의 사회적 어려움 (이데올리기적 자기 검열에 의한 제약, 그리고 아마도 실정법적 아니면, 사회내재적 주위 압력)이 그 정당한 평가를 가로막고 있었다.

따라서 김재규가 살해를 거사하게 된 이유중 하나는 미국에 대한 그의 일방적 해석, 아니면, 적어도 미국이 취한 일련의 외교적 조치와 정보기관내부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이 또한 부마항쟁 당시에 부마시민들을 분노케 했던 중요 사건이 바로 김영삼 국회제명이며, 이의 빌미가 되었던 김영삼 총재의 뉴욕타임즈 기자회견, 그리고 기자회견의 내용에서 거론된 미국의 역할 내지 책임론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의 위치는 1979년 사건 전개의 패러메터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때 패러메터는 무엇인가? 미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처지를 말한다. 그러면 미국 내적인 처지는 1970년대 석유 위기, 전후 호황의 종료, 그렇다고 하강곡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향곡선이나 자신을 갖고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던 시기는 끝나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외적인 상황은 우선, 베트남전쟁에서의 철수 이후,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철수가 가져온 미 우방세력에 대한 기대감의 우려, 공산권 국가들의 내부적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소련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대외적인 팽창의 강화 (아프카니스탄에의 침공, 폴포트 정권의 수립), 미국의 역할 축소에서 비롯되는 이란 혁명, 니카라과의 혁명의 성공 등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역할 축소, 그리고 미국에 의존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한국,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만 장개석일가, 이란의 팔레비 정권,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한국을 포함하여, 친미정권을 유지하는 것, 물론 친미정권의 수립 필요성은 지정학적,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다. 한국은 미국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여, 미국의 영향권의 확대 내지 보루, 옹호하는 최전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한국을 친미정권을 유지하여, 공산권의 침투를 막고,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최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은 허용해도 미

국에 대한 잠재적 저항 내지, 대외적으로 자율적인 국가건설(독립적인 정권수립) 만은 억제하는 것이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라고 이해한다. 필자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논문을 섭렵한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나 백과사전적인 지식에서는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 역시 특이한 것이 아니다. 어느 국가나 정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에 둔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이런점에서 본다는 당시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박정희 정권이 미군 철수에 맞서 독자적인 무장체제를 갖추려는 움직임은 심히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여진다.

허용가능한 체제인 친미적이면서, 내부적인 통치가 가능한 세력이 등장한다면, 민주체제 여부를 떠나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다. 물론 국민의 저항이 심각하여, 내부적인 혼란이 미국에 대한 신뢰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일 경우에는 친미정권이라도 버릴 수 있지만, 이것도 친미적 저항이나, 친미적 민주주의 정권을 의미한다. 1979년 부마항쟁 당시의 미국에 대한 야당 정치인, 그리고 부마항쟁 당시의 항쟁 시위대는 반미의 구호를 외치거나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반미가 한국사에서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80년 광주항쟁이후의 일일 뿐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입장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가능한 정도의 저항으로 김영삼의 일탈,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의 독자적인 대결에서 대등하거나 열세인 상황 (평가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압도적 우세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에서 핵무기의 개발, 내부 통합을 위한 독재체제의 유지, 중화학공업 발전을 통한 자체 무기 생산체제 확립 등의 일을 저항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유신 체제, 대통령 직선제 폐지, 미국외교에서 로비의 강화,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자금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에 대해 정부나, 야당이나, 정보기관이나, 국민들 역시 암묵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독재체제, 박정희 정권의 미국대외정책과의 갈등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 더구나 대외적인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권 엘리트 층은 미국이 취한 한국 정부에 대한 거리감에 대한 정보를 더욱 많이 수집하고 분석 해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민감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부마항쟁의 민중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한 경제적인 상황, 독재, 지역을 대표하는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 건 등이 행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지적한 미국무부의 전문에서도 계급전이라고 표현한 점, 그리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고, 자칫 전국적인 시위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점, 더구나 마산의 시위는 과거 1960년의 예를 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권타도로 정국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주 재미나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정보탐문이 있었다고 보여질 정도로 김재규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김재규는 미국과의 정보교환이나 의견을 전혀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적어도 김재규도 두 가지 점을

미국 국무부 자료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김재규도 전국적인 파급의 가능성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대량 살상을 감수하고라도 저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위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 즉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마항쟁에 대한 진압방식을 통해 추론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암묵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을 반증하기 어렵다.

#### IV. 현재와의 비교

당시의 한국에서 미국의 위치는 어떤가? 아마도 현재 보다도 더욱더 미국은 한국에게 국가의 지정학적, 교역경제적, 정권 유지적 차원에서 절대적이라고 보여진다. 즉 지정학적으로 현재는 물론 북한보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전략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국방선에서는 더욱 중요해 졌을 수는 있지만, 공산주의 팽창의 위협은 훨씬 감소한 상황이다. 물론 당시에도 북한은 중국에 군사적 대외전략적, 경제적 의존이 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보다 북한은 훨씬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여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역의존도 역시 미국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에너지 자원의 확보 역시 미국의존적이었다 (에너지 해상로, 미국 에너지 업체 의존).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판단해 보면, 두곳이상에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상군을 파견하여 한 나라를 지배하는 일은 어려워 보인다. 이는 미국의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군의 피해를 감당하고, 미국식의 물량위주의 지배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공산주의 팽창이나, 북한과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재산이익과 교역로 확보를 위한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상정하고 미군의 한반도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내부적인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 보다는 한국의 무역이나 국방을 통제하여, 미국의 군사적 교역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한국과의 외교정책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명백한 것은 잠재적 적으로서의 북한이 사라지고, 이념적 경쟁이 사라진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도덕적 우위의 정책은 외교에서는 우선권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내부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경제의 양극화, 재벌경제로의 심화와 더불어 정치적으로는 극우 정치의 발흥이 예견되고 있다. 이제, 당시 부마민주항쟁의 발단이 되었고, 실질적인 이슈였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진전에 대한 평가는 면면을 열거하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제기되는 유신으로의 회귀라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즉 사상과 예술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들어가보면, 국가의 국민을 옮아매는 장면이 연일 기사화되어 나온다. 즉 과거보다 알려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신과 교훈이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도 침투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부마민주항쟁에만 국한시켜 책임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

후의 일련의 민주화운동 노력이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퇴행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을 통해 민주화는 참여자와 사회, 국가 등의 체계적 조직적 의식적 노력이 없으면 유지 또는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금년에 유행하는 저서인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적 불평등이 갖는 정치적 함의,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발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경제는 이미 7~8년전부터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 선에서 정체되고 있다. 물론 경제나 산업면에서는 고도화의 작업이 진행되지만, 소득의 면, 사회성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발전이 아니라 퇴행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가 이제 사회자본, 지식, 시스템의 경제로 진입하면서, 정치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즉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인 노력에 의해, 산업과 경제의 고도화, 개인의 소득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개인 단독의 노력보다는 사회적인 환경이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에는 정치제도가 개인들에 허용하는 시민적 자유가 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역사의 차원에서도 안타까운 현상이다. 교통과 통신망의 확산은 시공간 상의 거리를 줄어놓았다. 그러나 민주와 참여의 의식은 반비례하여 줄어들고, 특히 창원의 중후장대 산업의 경우에는 지식화 시스템화 네트워크화가 정치적 제약에 의해 장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수 있지만, 문제는 바로 이런 병목에 발목을 잡혀있고, 이는 부마항쟁이 추구했던 시민적 자유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민적 자유를 위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대한민국은 물론,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남, 부산과 창원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개인적 행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부마항쟁과 주체’에 대한 논평

정성기(경남대 교수/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명예회장)

1. 이 논문은 비교적 근래 등장한 구술사 접근법으로 부마항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해온 차성환 박사의 후속 연구 성과다. 여기서 이데올로기, 행위양식 등의 측면에서 부마항쟁의 주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민중’과 ‘민중주의’에 대한 최근의 논란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1979년 가을, 부산과 마산에서 누가, 왜,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반유신투쟁에 나섰는가? 이런 의문과 관련하여 ’80-90년대에 유행했던 우파/좌파의 계급/계층론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여 구술사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주체에 대한 인식의 구체성을 확보하려 할 때 자연스럽고 당연한 접근이다.

차성환 박사는 15명의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구술을 분석하면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항쟁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체포되고 고문까지 당한 사람이라도 ‘일방적 피해자’를 구분하여 그들의 인식, 항쟁과의 관련을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일방적 피해자들이 정치를 모른다거나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주체적 참여자들이 박정희 독재에 대해, 혹은 장기집권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사실은 반정부 정치의식이 없었으나 처음보는 시위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혹은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대한 반감으로 항쟁에 나섰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부마항쟁 주체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허구라 느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공유했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당시 국민들 일반에서 ‘북한 공산독재’에 대한 저항감이 강했고, 야당의 정치이념이 미국적인 선진국에 치우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온 몸으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사람들이 거짓 민주주의,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라는 가치를 지향한 것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것은 엄밀한 논증을 더 요구한다. 서구적 사회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한국적 독재’가 아니라 한국적 전통과 특수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한국적 민주주의’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정치인과 지식인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일 뿐이다. 지식인과 달리 평범한 민중들, 특히 제도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한 ‘북한 공산당놈들’, ‘서양놈들’ 이란 말 속에는 지식인들의 이론과 이념으로 해석되지 않는 나름의 실체적 세계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차대전 후 제국주의 지배에서 독립한 나라들 중 한국이 드물게 민주화에 성공한 이유에 대해 역성혁명과 같은 동양 유교적 전통을 꼽는 논의와도 연관해서 생각할 문제다.

3. 구술자들을 통해서 부마항쟁 주체의 행위양식을 분석하여 발표자는 부마항쟁의 민중이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전투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 민중상’이나 저급하게 본능적 저항감을 표출하는 ‘본능적 민중상’과 달리, 유신정권의 기만성을 깨뚫어 볼 줄 아는 합리적이고,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진 ‘합리적 민중’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80년대 이래 민중운동론

에 연구자의 주관적 희망을 담은 혁명적 민중론의 오류나 엘리트주의적 민중론이 성행했던 것은 분명하며, 부마항쟁의 경우에도 민중의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서나 파출소 등 국가기구를 공격하여 방화를 한 소수의 행위는 비합리적이고, 단순 시위라는 일반적 행위양식을 보인 다수의 행위는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순수이론적으로 근대 사회를 상징하는 ‘합리성’이란 개념은 오늘날 가장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합리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밝혀진 개념없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쓰였다. 그리고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보자면, 국내외 체제 혁명이나 체제 내 혁명의 경우 광기의 비합리적 국가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불사하는 민중투쟁은 일반적인데, 민중의 정치적 실천에서 합리와 비합리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는 보다 깊은 의문과 답변이 함께 요구되는 사안이다. 논문에서 일방적 피해자가 아닌 항쟁 주체의 구술 사례에서 파괴, 방화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도 항쟁 참여의 직접적 계기는 상당히 다양한데, 이는 모두 합리적 행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4. 부마항쟁의 주체를 논하면서 대학생, 지식인과 구분하여 노동자, 자영업자, 고교생 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처음 부마항쟁을 시작하고 선도한 부산과 마산의 대학생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양자의 관계, 상호 차별성과 동일성도 연구해야 주체의 전모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부마항쟁 주체’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주체 연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부마항쟁 대상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주체에 대한 인식 연구도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시위대의 공격 대상에 공화당 지구당사, 방송사와 신문사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시위대의 주체적 인식과 감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5. ‘민중’ 개념이나 ‘민중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의 평가와 입론은 시론적으로 보이며, 별도의 본격적인 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한 논의는 동의하기 힘들다. 부마항쟁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항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참여한 데 비해, 5·18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라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부터 필요하다. 전두환 신군부는 자신의 새로운 정통성 확립을 위해 긴급조치를 폐지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슬로건을 폐기하고, 나아가 5·17 조치에서는 ‘부패한 유신잔당’을 숙청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18 항쟁 당시 아직 개헌은 실현되지 않고 유신헌법은 살아있었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바로 그 유신헌법에 따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최규하-전두환의 이중적 과도기적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반공군사파시즘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후 신군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단임제 대통령제하의 지배정당은 ‘자유민주’가 아니라 ‘민주정의당’이 되어서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모두 짓밟았다. 그런 점에서 부마항쟁과 달리 5·18의 시민은 박정희 정권에서와 달리 지배이데올로기가 된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항쟁했다는 주장은 사실의 부분적 오인과 함께 동일한 군사독재에 대한 ‘민주’, ‘자유’ 가치의 요구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요구로 치환하는 앞서 지적한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부마항쟁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논평

정성기(경남대 교수/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명예회장)

1. 이 논문을 개관하면 서론에서 현 시점에서 정부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희생자 보상사의위원회’(이하 부마항쟁위원회)가 출범하는 된 일의 의미를 평가,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부마항쟁 직후의 10.26사태, 그 전후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현재와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2. 현 시점에서 부마항쟁 진상규명이 된다는 것의 의미 평가를 보자. 부마항쟁 후의 5.18 등의 진상규명 등이 사실상 마무리가 다 되고, 6월항쟁도 역사가 된 지 오랜 현 시점에서, 그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사건이 알려지고 해석되는 시기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상조사/보상 등이 시작된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부마항쟁위원회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된 바로 그 정부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더 더욱 그러하다. 사건 한 세대 후 이런 상황에서 실현되는 부마항쟁 진상조사 등은 부마항쟁 당시, 참여자가 처한 당시 상황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평가하고, 사건의 공적 의미가 약화될 것이라는 발표자의 전망은 상당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주목할 것은 박정희 군사독재하 최대, 최초 민중적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김영삼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의 굵은 매듭인 ‘박정희 유신체제과 부마항쟁’의 거대한 아이러니다. 한 세대 이상의 진상규명 요구가 김영삼의 3당합당정부, 김대중의 DJP정부하에서도 묵살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조차 ‘부활한 박정희’와 ‘친박’의 위세에 눌려서 묵살되어 온 데 비추어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부산/경남과 전국적 민주역량이 총결집되어 부마민주항쟁법이 통과되고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정부하에서 실제로 부마항쟁 진상조사가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한국 민주화의 취약성과 함께 기적적 성취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마항쟁의 진상조사가 빈약하고, 보상 위주로 갈 가능성성이 놓후하지만, 이 진상조사의 개시와 명예회복, 보상 등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와 반유신 10월 부마사건의 성격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10월 부산/마산 사건은 지역에서, 그리고 학계와 민주적 제도권 일각에서 널리 ‘부마민주항쟁’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적, 공식적 차원에서는 ’79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폭압적으로 불인 이름, 즉 ‘반국가적, 폭동적 소요’로서의 ‘부마사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의 ‘부마민주항쟁법’ 통과과 정부의 ‘부마항쟁위원회’ 출범으로 비로소 반유신 ‘부마민주항쟁’이 박근혜 정부하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역사적으로 공인되고, ‘한국적 민주주의와 조국근대화 혁명’의 유신체제가 갖는 군사독재성도 공인되는 것이다.

3. 박정희 체제와 그 시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상당히 축적되었지만, 여전히 부마항쟁 관련 연구는 빈약한 가운데 그 대표적인 연구자인 이은진 교수의 이번 논문은 부마항쟁 관련 논의를 부마항쟁 그 자체에서 시기적으로 10•26사태로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한국-

미국과의 관계로 확장한 데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두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사실들과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다.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와 미국의 관계라는 뜨거운 주제와 관련하여 김재규와 미국은 부마항쟁의 민중성과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해 평가가 일치되었다는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상징같은 미국 조차 정부는 '63년 캐네디 암살과 관련한 문서를 거의 영구적 비밀로 분류할 상황이라는 사실 등을 제시하며 김재규의 '거사'와 미국의 관계를 사실에 기초하여 결론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인간 역사의 비밀/진실과 관련하여 의미가 깊은, 그리고 타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4. 김재규가 독재자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것이 유신체제를 끝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규의 거사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심각한 이념적 논란의 주제이기도 하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죽음과 동시에 자신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불러들인 전두환 일파의 새로운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이 진행되는 시기에 사형을 당했는데, 김재규의 사형은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와도 직결된 이 사안에 대해 아직도 학계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편이며, 부마항쟁 당사자들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안에 대해 이은진 교수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조직의 핵심적 수장인 김재규가 국내의 군 수뇌부나 미국의 지지라는 아우라 없이 이 나라 역사의 전진을 위해 본인만의 희생을 전제하는 '영웅적 거사'를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재규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무덤까지 갖고 가며 숨긴 중요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아울러 평자는 이 사안에 대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유신은 끝냈지만 대한민국을 박정희 체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대미 종속적 전두환 신군부의 나라로 만든 김재규의 거대한 환상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김재규의 그 환상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하지 않고도 유신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길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자신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5. 논문에서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련의 한국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패러메타로서 기능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논문에서 지적된 구체적 사실들로서 박정희 정부와 미국 카터 정부의 갈등, 김영삼 총재와 야당인 신민당의 인권/민주주의 미국에 대한 기대, 부마항쟁 시위대의 반미 구호 부재, 미국 정부의 세계적 패권체제에서 한반도의 의미와 한반도 관리의 입장 등은 그 현재성과 관련하여, 혹은 5.17/5.18이나 5공체제의 등장 등과 관련하여 성찰할 가치가 큰 사항들이다. 여기서 한미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서 혈맹이라 여겨 온 미국과 공산 중국의 국교정상화, 월남전 패배에 따른 고립주의와 주한 미군 부분 철수, 배신감을 느낀 박정희 정권의 독재강화와 중화학공업화, 자주국방 정책 등은 공산독재진영-자유민주진영론에 은폐되어 온 강대국의 냉엄한 자국 이기주의-국가/민족주의가 보다 더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오늘날 한국의 상대적 지위가 높아지고 공산위협은 당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상황에서 이 나라 보수 세력의 이념적 대미 종속성을 오히려 더 강한 신사대주의적 현실, 진보 세력 일각의 북한에 대한 시대착오적 환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

다. 이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견해를 청하고자 한다.

6. ‘부마항쟁과 민주화운동’이라는 논문 제목은 실제의 논문 내용과의 부조화가 있다. 논문 제목을 구체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1부 토론 II>

## 사회운동 연구방법론의 숙고와 개념들의 의미 그리고 적용의 어려움 - ‘부마민주항쟁과 주체’에 대한 토론 -

정호기(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부마민주항쟁<sup>9)</sup>은 한동안 ‘잊혀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은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영역 일부에서 회자되고 반추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치·사회적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사건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위상이 급격히 고양되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위상과 의미는 정치체(polity)의 성격에 따라 부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경과하면서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도 생겨났다.<sup>10)</sup>

발표자는 부마민주항쟁의 복권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발표자가 수행해 왔던 연구들을 통해 표방했던 문제의식과 고찰 지점의 연속으로 이해된다. 또한 부마민주항쟁을 또 다른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다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표자의 그간 연구들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탐구되어야 할 터이다. 하지만 학술행사의 여러 여건을 감안해 발표문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생각해 볼 지점들과 의문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구술사 연구방법론은 시론적인 도입 수준을 넘어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정착된 지 한참이다. 연구자들은 물론 각종 단체들과 국가 기관들도 구술자료 수집에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구술사 연구방법론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한계와 문제점도 조명되었다. 구술사 연구방법론이 주제의 다양화, 심화, 연구 자료의 보완과 확장 등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과 대안은 적절하게 제시되지 못했으며, 연구자 혹은 구술 자료 수집자의 역량과 윤리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구술자료 생산과 연구에 적용은 신중해야 하고 세심한 검토와 다른 자료들과의 교차 분석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는 구술 자료들이 생산되었던 시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발표자는 이 자료들이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생산된 것들 가운데 선별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은 이 글의 문제의식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자료

9) ‘부마민주항쟁’은 법률에 명시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앞으로 법률과 제도의 실행 등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법률의 용어로만 보면, 부마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에 비해 급진적인 것으로 읽힌다. 또한 ‘항쟁’이라는 개념은 법률의 명칭에 처음 사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누구에 대한’이라는 상대를 강력하게 규정하는 효과를 내포하고 있어서 적용 여부에 따라 큰 함의를 가질 수 있다.

10) 홍순권(2011),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노부산』 27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가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어서 자료의 객관성을 보증하는 논리로 설명될 수 있지만, 역으로 목적과 일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구술 자료임을 고백하는 것일 수 있다. 구술조사에서는 연구자의 편의성과 선택성 그리고 접근성 등이 자료 수집에 영향을 미치기가 쉬운데, 조사 대상의 모집단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술조사가 이루어졌던 시기의 한국 사회는 절차적 민주화의 안정화 혹은 후퇴 등으로 인해 각축을 벌였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태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상당수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들과 제도들에 의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보(배)상 등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점임을 염두에 두면서 자료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쟁점들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부마민주항쟁은 재판 등을 통해 공식화된 기록들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당시 국가가 생산한 다양한 문서들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이 정치적으로 복권되기 이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들도 아쉬운 측면이다. 또한 청문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와 견해들이 공개화·공식화되는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지방정부 등이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정리는 것에 의지가 미약했던 것도 부마민주항쟁의 주체와 이들의 인식과 성향 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이 놓인 기반이 다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글이 강조하여 주장하는 점은 부마민주항쟁의 참여 주체들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중요한 이데올로기라고 파악했는데, 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연구자들이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구술자들이 말했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동일한 수준과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고를 필요로 한다. 어쩌면 이 개념은 다른 용어들로 대치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강조함으로서 대안세력들의 활동이나 이념 그리고 지향이 등이 저평가되거나 주변화 되는 것은 아닌지도 간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쪽(5장)의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갖춘 민중들’이라는 표현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도 숙고와 설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부마민주항쟁의 주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부마민주항쟁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사회운동들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발표자는 ‘민중’ 개념의 유효성과 유연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토론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현재 발굴 및 정련된 개념들로 과거를 고찰하고 재음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제기이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지 못한 적용이 이루어져 개념이 실재를 변조는 현상들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발표문은 ‘민중’ 개념의 적용 여부와 ‘민중주의’에 대한 논의에 대해 지면을 할애했던 것만큼 이를 부마민주항쟁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보완과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지역’이라는 변인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발표자의 터전이 부산인 관계로 이 지역과 관련된 논의가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부마민주항쟁이라는 용어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마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부마민주항쟁은 지역에 따라 시차를 갖고 전개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지역들이 갖는 사회 운동의 역사성과 인구 구성적 특성 등으로 인해 주체의 구체적 성격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부마민주항쟁의 주체를 고찰하고 논의함으로서 얻게 되는 실효성이 무엇인가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운동 주체에 대한 다른 해석과 설명은 운동의 성격과 의미 등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발표자는 서론에서 ‘항쟁의 주체를 밝힘으로서 항쟁의 목표, 성격, 양상 등 많은 것들이 해명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어떤 결론 혹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연구와 현실이 놓인 지평에 대한 고민점이 될 수 있으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상규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발표문이 보다 좋은 글이 되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평가와 제도적 작업에 절대적 의미를 갖기를 희망한다.

# 부마민주항쟁과 국가의 과거청산

-과거해석을 둘러싼 현재의 싸움-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 1. 국가의 과거청산 경과

가. 권위주의 정권의 사실상 연장인 김영삼 정부가 끝나고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의 과거사 청산작업 시작

나. 2000년 1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심의위원회>, 10월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활동

“민주화 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회복 신장시킨 활동”

다.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정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전후시기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 해방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진실규명범위	계	처리건수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총계 (%)	11,175 (100.0)	8,450 ( 75.6 )	528 ( 4.7 )	1,729 ( 15.5 )	351 ( 3.1 )	97 ( 0.9 )	20 ( 0.2 )
항일독립운동	274	20	23	221	10		
해외동포사	16	5		8	1		2
적대세력관련	1,774	1,445	10	292	22	1	4
민간인집단희생	8,206	6,742	454	764	242	4	
인권침해	768	238	41	373	73	29	14

기타	137		71	3	63
----	-----	--	----	---	----

라.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 청산

마. 형사재심과 민사 손해 배상

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

사. 개별 사건별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법 개, 제정 움직임

## 2.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

가. 과거사 위원회의 진상규명(2010. 5.25 결정)

“결정요지”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계엄군·경찰에 의해 학생·시민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시민·학생들이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1979. 10. 20. 12시 마산 지역에 발동된 위수령은 법정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위수령이 발동되기 이전 군부대가 투입되어 진압작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대를 연행하여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자료 검토

- 육군본부, 「육군고등군법회의 수사·공판기록」 12,000여 쪽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기록
- 국제신문, 경남매일, 한국일보, 월간조선신문자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중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 1989.
- KBS, 「KBS영상실록」 2005. 9. 25. 방송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제103회 제5차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79. 11. 22.
- 기타 문헌 자료 : 조갑제, 유고, 한길사, 1987. 외 문헌자료.

### 진술 조사

위수령 발동 이전 군부대 투입 여부 및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 및 수사관 등 참고인 총 40명에 대해 서면조사 및 진술청취를 하였다.

1 신청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대표: 이규정, 차성환) 2009. 12. 10. 2010. 4.

## 9. 신청인 면담조사 진술 청취

- 2 참고인 김○○ 2009. 12. 21. 부산 YMCA 간사 진술 청취
- 3 " 이○○ 2009. 12. 22. 부산대 공대 3년 진술 청취
- 4 " 김○○ 2009. 12. 22. 가내수공업 진술 청취
- 5 " 주○○ 2010. 1. 6. 서울대 제직생 진술 청취
- 6 " 노○○ 2010. 1. 14. 서점 운영 진술 청취
- 7 " 전○○ 2010. 1. 19. 금은방 직원 진술 청취
- 8 " 황○○ 2010. 1. 19. 전○○의 처 진술 청취
- 9 " 황○○ 2010. 1. 20. 금형업 진술 청취
- 10 " 이○○ 2010. 1. 21. 동아대 법대 3년 진술 청취
- 11 " 강○○ 2010. 1. 28. 의상실 운영 진술 청취
- 12 " 전○○ 2010. 1. 29. 부산대 경상대 2년 진술 청취
- 13 " 지○○ 2010. 1. 29. 마산 지역 여행자 진술 청취
- 14 " 한○○ 2010. 2. 4. 경남대 경상대 2년 진술 청취
- 15 " 남○○ 2010. 2. 11. 경남 매일 사회부장 진술 청취
- 16 " 최○○ 2010. 2. 19. 경남대 국어 교육 3년 진술 청취
- 17 " 공○○ 2010. 3. 3. 경남 매일 사회부 기자 진술 청취
- 18 " 정○○ 2010. 3. 4. 경남대 경제학과 3년 진술 청취
- 19 " 이○○ 2010. 3. 5. 마산 경상고 3년 진술 청취
- 20 " 옥○○ 2010. 3. 31. 경남대 국어 교육 3년 진술 청취
- 21 경남도지사 김○○ 2010. 1. 30. 경남도지사 서면 조사
- 22 보안부대 정○○ 2010. 3. 9. 부산 보안부대 대공과 진술 청취
- 23 " 김○○ 2010. 3. 11. 부산 보안부대 대공계장 진술 청취
- 24 " 백○○ 2010. 3. 18. 합동 수사단 파견 진술 청취
- 25 보안부대 구○○ 2010. 4. 6. 부산 보안부대 수사계장 진술 청취
- 26 " 백○○ 2010. 4. 13. 마산 보안부대장 진술 청취
- 27 마산 경찰서 윤○○ 2010. 4. 1. 마산 경찰서 수사과 진술 청취
- 28 " 백○○ 2010. 4. 8. 마산 경찰서 수사과 진술 청취
- 29 " 윤○○ 2010. 4. 14. 고성 경찰서 수사과 진술 청취
- 30 " 주○○ .2010. 4. 16. 마산 경찰서 수사과 진술 청취
- 31 " 안○○ 2010. 4. 20. 마산 경찰서 수사과장 진술 청취
- 32 부산 시청 최○○ 2010. 2. 22. 부산 시장 전화 조사
- 33 " 이○○ 2010. 2. 12. 부산 시청 경리 계장 전화 조사
- 34 " 송○○ 2010. 2. 23. 부산 시청 회계과 전화 조사
- 35 " 이○○ 2010. 2. 22. 부산 시청 서무 계장 전화 조사
- 36 계엄 사령관 박○○ 2010. 5. 6. 부산 지역 계엄 사령관 진술 청취
- 37 위수 사령관 조○○ 2010. 5. 11. 마산 지역 위수 사령관 진술 청취
- 38 해병대 이○○ 2010. 5. 13. 해병대원 진술 청취

39 해병대 김○○ 2010. 5. 19. 해병대 소대장 진술청취

40 합수단장 권○○ 2010. 5. 24. 부산 보안대장

### 사건의 배경

1979년 부산시경(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79년 부마사태의 분석」에 의하면 ‘공화당 장기집권에 대한 전 국민적 염증’과 ‘신민당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과 동 당원들의 의원직 사퇴 결의’등이 부마항쟁의 정치적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1979. 12. 박정희 대통령 사해사건 「항소이유서」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은 거세어졌고, 급기야 부산, 마산사태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부산사태는 체제저항과 정책 불신 및 물가고에 대한 반발에 조세저항까지 겹친 민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 및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등 본인이 직접 시찰하고 판단한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다.”고 기술하였다.

당시(이하 진술인에 대한 ‘당시’기재는 생략한다) 계엄사령관 박○○은 진실화해위원회조사에서 “부산시위 발단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수단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 기억이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삼 총재제명과 부산지역의 경제불안도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국제신문 취재기자 조갑제의 취재내용에는 “부산계엄사령부가 중심이 된 합동수사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침체에 의한 서민 상인층의 불만을 부산항쟁의 첫째 이유로 뽑았고,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과 그에 항의하여 제출한 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선별 수리하겠다고 한 정치적 이유가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항쟁의 배경에 대해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총재로 당선된 김영삼은 유신정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했다. 여기에 경찰이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킨 사건은 정치권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고 박정희 정권은 그런 김영삼을 신민당 총재직에서 제명하고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해 버린다. 김영삼에 대한 정치적 박해는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했고 부마민주항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 들어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은 제2차 석유파동과 이로 인한 세계적 불황, 국제 고금리 시대의 도래와 같은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는 빈곤과 심각한 빈부격차로 민중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 가고 있었다. 특히 수출지향적 경공업 중심 도시였던 부산과 마산의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 구제조치 현황

신청인 차성환(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의해 권리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대학생, 참가자 및 피해자 현황, 파출

소 전소 등 인적 물적 피해 진상과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부마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된 현황은 22명 총 27건으로 신청사유는 ‘명예회복(유죄판결)’, ‘상이(보상)’, ‘해직’, ‘기타’이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상이자로 인정된 경우는 14건(일부인정 포함)이고, 불인정된 경우는 13건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부마항쟁 시위에 참여하여 ‘구류’, ‘집행유예’,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민주화관련자(상이 포함)로 인정되지만, ‘면소판결’, ‘공소기각’은 관련법이 정하는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결론 및 권고사항

#### 결론

여당(공화당)의 ‘김영삼 의원 제명 변칙처리’ 등이 원인이 되어 1979. 10. 16.부터 10.20. 까지 부산광역시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저항한 시위가 발생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위 시위(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계엄군·경찰에 의해 학생·시민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시민·학생들이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1979. 10. 20. 12시 마산지역에 발동된 위수령은 법정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위수령이 발동되기 이전 군부대가 투입되어 진압작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대를 연행하여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권고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의거 국가가 행할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국가는 1979. 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3. 6.4 제정)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 위원회 운영

(2) 조사방법,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법8,9조) 조항의 실효성

과거사법에 있는 실지조사,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이나 과태료 조항 불비

(3) 특별재심(법11조) 조항 신설

### 3. 과거 해석을 둘러싼 현재의 싸움

가. 국가의 존재이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울산보도연맹사건, 국가의 소멸시효주장 배척)

대법원 2011. 6.30 선고 2009다72599 손해배상 판결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고, 따라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점,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11. 27.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태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그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렵잖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자 기산일 산정의 후퇴 ( 인혁당사건등)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는 물론, 국민소득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수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통화가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앞서 본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

다. 과거사 사건의 국가 잘못에 대한 국민의 입증책임 강화: 국가기관인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사실상 부인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손해배상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특히 피고 스스로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시도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처벌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막았던 경우도 없지 않고 그 사이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개별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던 사람들도 상당수 사망하였다라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희생자의 시신이나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당시 희생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이나 경찰 등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에서까지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 조차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법적 절차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실심리의 자세이다. 물론 그러한 심리의 과정에서 정리위원회의 조사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 측에서 개별 사건의 참고인 등이 한 진술 내용의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고, 그러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때에는 민사소송의 심리구조상 피고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사실상의 입법행위

(1) 위 2102다 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상 소멸시효정지에 준하여 6개월 이내에 소제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을,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보상결정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소 제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01844 손해배상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등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마. 민보상법상 보상금 수령자 소 각하 (동일방직사건)

대법원 2014. 3.13 선고 2012다45603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4. 끝나지 않은 과거청산

- 과거사법 제, 개정
- 국가의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시효제도 배제특별법
-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과거청산의 상설화

# 과거사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I.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 1개월의 활동을 마감하고 업무가 종료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과거사 관련 일부 유족들은 국가가 저지른 위법한 국가폭력을 적시한 진화위의 결정문을 토대로 유족회별, 개인별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진실규명이 된 이후에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노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이행과 진화위 결정문의 3년 시효만료가 다가옴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민사회 또한 각종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부분적으로 전개해 오면서 배·보상특별법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깨고 19대 총선의 결과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꿔, 또 다시 국회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대선의 정치 지형이 한층 복잡해진 양상이다.

국회와 대선을 바라보는 유족과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적인 야당이 승리하는 것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한층 유리한 지형과 정치 비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가령 이명박 정부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진화위 제2기가 구성된다면 진화위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사무처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진화위 제2기의 역할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제1기에서 각하되거나 진실규명 불능된 자들을 위한 재조사
- 제1기에서 미신청된 자들을 위한 추가 신청조사
- 제1기 개별사건 조사보고서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지역별 조사보고서와 함께 최종적인 유형별 보고서로의 재편
- 제1기 진실 규명된 자들을 위한 후속조치 : 배·보상특별법 추진과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추진
- 진화위 제2기 외의 기구로써 기준의 진실규명이 된 사람들을 위해 배·보상특별법 추진과 과거사연구재단을 통한 추모위령사업

이를 위해 진화위의 조직과 직제, 조사활동과 업무, 관련법 개정 등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과거사위원회의 복원과 구성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 1. 조직과 직제

### 가. 위원회의 구성

진화위의 조직은 크게 의사부와 집행부라는 2개의 구조가 있다. 의사부인 의결구조는 위원장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된 진화위의 전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말함이고, 집행부인 집행구조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무처를 이름이다.

집행부의 최고 결재권자는 물론 위원장이 존재하지만, 내부 위임전결규정과 업무 집행구조상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이 업무의 대부분을 집행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화위 제2기가 구성된다면 변화되는 정치 지형에 따라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화위 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장의 정치 성향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그 활동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근식(서울대)이 「진실과 정의 포럼」에서 발표한 ‘한국현대사에서의 진실화해 위원회의 경험 : 성과와 한계’에서처럼 진화위는 지난 5년간 송기인, 안병욱, 이영조 등 3명의 위원장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해 왔는데, 앞의 두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되었다.

모든 정부 위원회는 어떤 정부 하에서 운영되는가에 따라 그 활동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참여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회가 진화위의 활동 자체에 비판적인 이명박 정부의 통제 하의 2010년에 이르게 되면, 위원회는 ‘진실규명’ 자체에 회의적이고도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위원장과 위원의 3/2 이상을 점하는 상황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보면, 이 위원회는 출범부터 2007년까지의 2년, 그리고 2008년부터 2년, 그리고 마지막 2010년이라는 세 개의 국면을 거치면서 존속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진화위의 위원회 위원은 15인(상임위원 4인, 비상임위원 11인)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4인, 국회가 선출한 8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임기 2년으로, 국회에서 8인(상임위원 2인 포함)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인(상임위원 2인 포함)을 지명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다가오는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집권하였을 경우의 정치지형에 따른 위원 구성을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1> 여당인 새누리당이 집권한 상황의 경우

	계	여당(새누리당)	야당(민주통합당)	기타 정당
--	---	----------	-----------	-------

국회	8(2)	4(1)	3(1)	1
대통령	4(2)	4(2)		
대법원장	3	3		
계	15(4)	11(3)	3(1)	1

### ● ( )은 상임위원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집권한 상황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여 야위원 구성비가 11:4로 진화위 제1기 3대 위원장(이영조) 시기와 같은 수준으로 사건의 진실규명 수준과 정도 및 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보수, 편향적 시각과 위원장의 성향에 따른 일방적인 구조 및 업무 집행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므로 진화위 제2기는 무조건 설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차라리 진화위 활동에 대한 18대 차기 정부의 과거사 관련 비전과 미련을 버리고 19대 차기 정부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 나. 위원장과 상임위원

진화위는 단기간에 고도의 집중과 역사적 책무를 필요로 하는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조직과 직제에 있어 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과 국장이 전략적인 팀워크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이어야 한다.

또한 진화위 제1기의 예에서처럼 지나치게 정치적 입지를 가진 자나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급급한 관료적인 성향의 인사도 철학과 소신 없이 사건 조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제외함을 검토해야 한다.

진화위 제1기의 경우, 위원장 이하 대부분의 임원들이 6개월 이내에 빠른 속도로 관료화 경향을 보이면서, 수평적인 평등 논의구조는 완전히 실종되고 지시와 보고에 의한 수직적 지휘명령체계로 길들여짐으로 인해 조사원 구성원 다수의 생산적인 논의를 담아내지 못한 과거를 빼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다. 상임위원의 자격과 역할

상임위원으로는 진화위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이를 보좌하는 3명의 상임위원이 있다. 지난 진화위 제1기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교수, 변호사, 정당 정치인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 경험	전문성	문건정리능력	논의 구조
종교인	유	중	중	독선적

교 수	무	유	유	수평적
변호사	무	유	유	독선적
정당정치인	유	중	유	수직수평적
사회활동가	유	중	유	수평적

- 종교인 : 조직 운영 경험은 있으나, 전문성이 없으며 조직 운영에 있어 수평적인 논의구조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소 독선적인 경향이 있으나, 자기 주관이 대체로 뚜렷하여 조직 경험을 바탕으로 수직 수평적 논의구조에 익숙해지면 수많은 업무상의 상황판단과 주변 의견에 대한 자기 주관과 중심이 대체적으로 확실함.
- 교수 : 전문성이 있으며, 조직 운영에 있어 수평적인 논의 구조에는 익숙하나 이마저도 조직 운영 경험이 없다보니, 수많은 업무상의 상황판단과 주변 의견에 대한 자기 주관과 중심이 자주 흔들리는 경향이 많음.
- 변호사 : 전문성은 있으나, 조직 운영에 있어 조직 운영 경험이 없다보니, 수많은 업무상의 상황판단과 수평적인 논의구조에 익숙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이마저도 주변 의견에 대한 자기 주관과 중심이 자주 흔들리는 경향이 많음.
- 정당정치인 : 조직 운영경험과 문건 정리능력은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은 중 정도이며, 조직 경험을 바탕으로 수직 수평적 논의구조에 익숙하면서 수많은 업무상의 상황판단과 주변 의견에 대한 자기 주관과 중심이 대체적으로 확실하여 조직 관리에 매우 적합함.
- 사회활동가 : 정당정치인과 같이 조직 운영경험과 문건 정리능력은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은 중 정도이며, 조직 경험을 바탕으로 수직 수평적 논의구조에 익숙하면서 수많은 업무상의 상황판단과 주변 의견에 대한 자기 주관과 중심이 대체적으로 확실함.

따라서 대안으로는 정당정치인이나 시민사회활동가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당정치인과 시민사회활동가는 준 전문성을 토대로 조직 운영 경험에 있어 비교적 수직, 수평적인 평등·논의구조에 익숙하고 정부조직과 관변단체에 대한 입장이 대체로 혼들림이 없이 분명하기에, 한시적인 위원회 구조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다.

#### 라. 사무기구

##### (1) 사무처

###### ①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실질적으로 집행부인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막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의사발언을 참고로 할뿐이다. 실질적인 집행부의 책임자인 사무처장이 정작 사건조사와 관련된 의결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집행부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사무처장은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서처럼 상임위원

을 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또한 사무처장은 그 자격에 있어서 전문성과 함께 조직 운영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수평적인 평등논의구조에 익숙하고 정부조직과 관변단체에 대한 입장이 대체로 혼들림이 없이 분명한 시민사회활동가가 적합하다. 말하자면 지나치게 관료적인 경향은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한다. 이는 한시적인 위원회 구조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어야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 ② 국장

사무처의 국장은 정부조직법상 고위 공무원단중 파견직과 별정직의 계약직을 채용하여 전문성 있는 책임자를 원한다.

파견직 -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결여한 상태로, 현직 중앙부처의 국장급은 지원부서외에는 업무의 연관성이 없어 전혀 효율적이거나 적합하지 못하다.

별정직·계약직 - 전문성을 토대로 조직 운영 경험에 있어 비교적 수평적인 평등논의구조에 익숙하고 정부조직과 관변단체에 대한 입장이 대체로 혼들림 없이 분명한 시민사회활동가가 적합하다. 한시적인 위원회 구조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

### ③ 조사관

위원회 제1기 경험상으로 볼 때에, 조사관은 전문적이기보다는 인권침해사건이나 집단희생사건 전체에 대한 맥락과 함께 역사적 지식과 혁신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조사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함께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한 보다 전문적인 분야는 토론과 함께 별도의 자료 분석 전문위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 2. 조사 활동과 업무

진화위의 구성원들은 시민사회영역과 정부영역, 학술영역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분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비교적 수평적인 문화에 익숙한 성원들로써, 위계적인 관료 조직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화위는 이들을 통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과 함께 업무의 토론풍화 정착을 필요로 했다.

### 가. 조사의 형식

조사활동은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진화위의 핵심적인 업무이다. 진상규명은 또한 국가가 저지른 위법한 국가폭력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기에 그 가공할 규모와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하는 조사방식은 문헌 및 현지조사를 한 바탕위에서 이를 전수조사하는 방식과 생존한 유족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조사하는 신고주의적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신고주의에 입각한 업무방식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사건조사방식을 신고주의에

서 탈피하여 이 두 가지의 방식을 혼용하여 처음부터 직권조사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모든 사건을 신청사건 중심에서 전수조사 형식의 직권조사로 전환이 필요하다.

#### 나. 조사의 형태와 보고서의 형식

진화위 초기, 민간인학살 집단희생 조사관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 조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건에 대한 지식 및 조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없다보니, 사건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것은 다른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에 비해 민간인학살 문제를 다루었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다른 과거사위원회에 비해 늦게 출범하여 우수한 조사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건유형별 팀편성과 조사를 수행하였던 것인데, 조사관들이 실제 조사과정의 현장에서 부딪힌 어려움은 미군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지역 안에서 군경토벌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희생사건, 적대세력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유형별로 접근할 경우 사건의 전체적 맥락 설명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이기에 조사의 형태를 개별사건 중심에서 유형별 사건이 아닌 처음부터 곧 바로 지역별 사건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바로 채택해야 한다. 말하자면, 민간인학살 집단희생사건의 경우, 종합보고서를 행정기초단위인 시군별 지역보고서로 재편하여 광역단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유형별 보고서를 보완하여 완성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권조사방식과 지역별사건으로 조사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는 사건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개별사건 조사보고서가 아닌 지역별사건 조사보고서로 작성하게 되어, 개별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사건조사 진도의 추궁과 단기적 성과주의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개별신청사건 중심이 아닌, 유형별 사건으로 1차 분류하여 종합보고서를 염두에 둔 사건유형별 조사보고서로 접근하여 작성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사건을 개별사건 중심에서 유형별 사건이나 지역별 사건으로 1차 재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러할 경우, 조사관이 제1기에서처럼 많지 않아도 되며, 제1기에서 이미 겸종된 조사관이므로 이중 역량과 책임감, 사명감이 있는 조사관을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다. 진화위의 사건 심사요령과 기준

진화위의 사건 심사요령과 기준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달라졌다. 이는 사건의 심사요령과 기준이 없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직제는 조사부서와 심의부서가 각각 별도로 편제되어 심의 분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족 여부의 심사, 사건의 해당 여부의 심사 등을 위해 3단계 검증의 구조를 설정하여,

이를 사전에 심의 의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1) 조사국, 2) 전문위원회, 3) 소위원회를 거치되, 위원회에서는 의결 구조인 전원 위원회와 소위원회와의 역할과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전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집행부로의 위원장만 존재하게 하며, 소위원회 구조로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의결의 완결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건의 유형이 인권침해사건과 집단희생사건으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소속 소위원회 위원은 상대 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의결하는 완결구조와 제도가 필요하다. 진화위 제1기에서처럼 위원회가 소위원회 역할을 또 다시 자임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 모두를 소비할 뿐이다.

말하자면, 사건조사는 조사부서가, 사건 심의는 심의부서가 역할분담 체계로 업무 보강과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직제기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 라. 국회의 대응

진화위는 형식상의 독립적인 기구이다 보니, 국회의 대응에도 예·결산과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야 했다. 국회 업무는 예·결산 과정과 조사 진행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형태가 주 업무를 이루는데, 이러다 보니 1년 평균 60일 이상을 국회업무에 매달리어야 했다.

따라서 보고서의 경우, 보고서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하여 최종보고서를 보고하는 식으로 법 개정 추진을 하고, 예산의 경우, 친일재산환수위원회처럼 예산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게 되면, 국회의 대업무보고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국민 대홍보 전략

인권침해사건과 집단희생사건 모두를 지역별·유형별 보고서로 재편하여 정치공안조작사건과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국가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국가 범죄인 국가폭력을 국민들이 실증적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의 공안정부가 간첩조작사건을 대규모로 기획하여 공표 날조한 보도사례처럼 이를 극대화해야 한다.

진화위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또한 국회나 정치권에 의해 제기되는 자신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따라서 진화위는 최대한 언론에 자신들의 진실규명작업이 공세적으로 노출되어 그동안 왜곡되었던 국가폭력 관련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학습효과를 거듭하는 과정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3. 관련 법 주요 개정안

#### 가. 민족독립사건 제외 - 보훈처 전담이 필요

이른바, 한 지붕 세 가족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던 진화위는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건’인 민족독립사건을 진화위 같은 한시적인 기구에서 다룰 것이 아닌 보훈처 같은 전문적

인 상설기구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

#### 나. 신청사건 중심에서 전수조사 형식의 직권조사로 전환

진상규명은 또한 국가가 저지를 위법한 국가폭력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신고주의에 입각한 업무방식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사건을 신청사건 중심에서 전수조사 형식의 직권조사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진화위 제1기에서 미신청된 자들을 포함한 추가 신청조사 형태를 포함한다.

#### 다. 위원회의 지위

진화위는 기본법 제8조에서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위원회나 위원들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나 그 밖의 과거청산관련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다. 진화위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중앙관서와 동일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진화위는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기본법 제3조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기본법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법 제14조에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독립성이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 조정사항이며, 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화위는 형식적인 독립기구보다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되, 친일재산환수위원회처럼 예산은 유관부처인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고, 인사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파견토록 하여, 사건조사에 주력하여 일상의 소모적인 업무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 라. 위원의 임기 – 진실규명 조사활동 기간과 함께하는 4년 단임제

어떤 정부 하에서 운영되는가에 따라 그 활동은 큰 영향을 받는데,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원이 그러하다. 이는 조사방식과 형태, 사건 심의기준, 보고서의 형태, 일반 업무지원의 비중, 위원회 회의 운영방식 등의 모든 진화위 활동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기간이다 보니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하는 성과주의에 급급하여 부실한 보고서를 양산하는데 급급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서처럼 위원의 임기를 진실규명 조사활동 기간과 함께하는 4년 단임제가 효율적이고 적합하다.

#### 마. 상임위원의 조정 – 3인을 2인으로 조정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사건인 민족독립사건을 보훈처에 위임하면 상임위원 1인이 필

요치 않으므로 3인을 2인으로 축소 조정함이 적합하다. 조정된 상임위원은 각각 인권침해사건과 집단희생사건을 책임지되, 이중 1인은 사무처장을 겸임함이 예산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 바. 사무처장의 위상 –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실질적으로 집행부인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막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의사발언을 참고로 할뿐이다. 실질적인 집행부의 수장인 사무처장이 정작 사건조사와 관련된 의결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집행부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사무처장은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서처럼 상임위원 중 1인이 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 사. 제1기에서 각하되거나 진실규명 불능된 자들을 위한 재조사

진화위 기본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불능 및 각하 결정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결정 후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화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신청과 이를 처리하는 기간이 최소 120일,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위는 2010년 6월에 들어서면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폭주하면서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 결국 위원회는 진실규명 또는 불능 등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조사보고서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의 구체적인 검토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더구나 제3대 위원장 이영조는 2010. 7. 27. 제141차 전원위원회에서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장의 조사보고서 결재가 지연되어 2010. 9. 15. 현재 30여 건의 보고서가 결재가 안 되고 있었고, 이는 신청건수로는 950여 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들은 거의 10월 초에 들어서서야 결정문이 통지되기 시작했고, 이때는 이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기간인 120일은커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도 남아있지 않은 물리적인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제1기에서 각하되거나 진실규명 불능된 자들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 아. 조사보고서 작성

현행 진화위 기본법 제32조 ①항은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국회의 독촉과 부정적인 견제로 인해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하는 성과주의로 인해 부실한 보고서를 양산하는데 급급하였다.

따라서 보다 충실향 조사와 견실한 보고서를 생산하기 위해 종합보고서 형식으로 위원회 활동 종료 시에 1회에 한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작성하여 보고하는 형식이 적합하다. 이때에 종합 보고서는 지역별 보고서와 유형별 보고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보고한다.

#### 자. 과거사연구재단

진화위의 진실규명 활동은 ‘전쟁에 의한 고통의 해원, 화해와 상생, 분열극복과 국민통합, 국가의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진화위는 3년간(2010년 3월말까지) 총 13개소에서 약 1,583구의 유해를 수습하였는데, 현재는 충북대의 임시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 따르면, 유해는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진화위가 권고한 국가사과, 관련기록 정정, 위령사업, 역사기록 등재, 평화-인권 교육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를 위하고, 유해발굴과 안장에 대한 묘역 및 추모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도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립과 기금 출연 추진을 진화위 제2기 활동기간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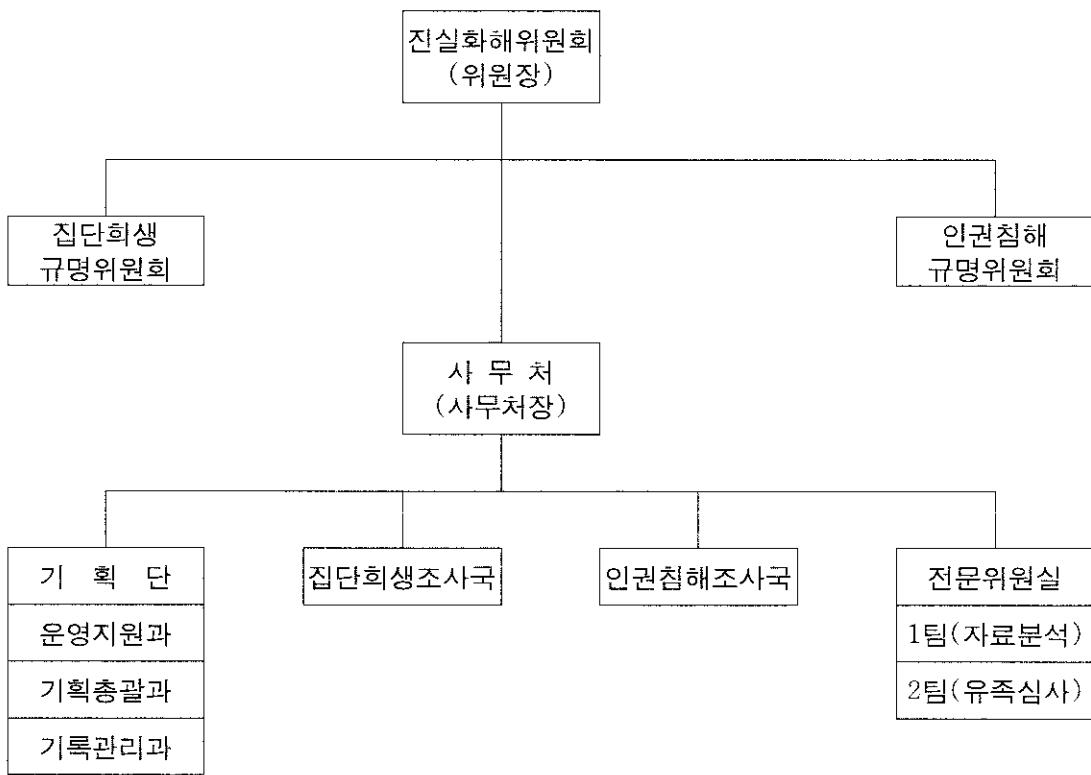
#### 차. 시행령

##### - 공무원 정원

공무원 정원은 위원회가 자체 수요파악을 한 이후 관계부처와 별도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파견직은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조사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보고서 작성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유휴자원이 되어 오히려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 참고로 이상의 내용을 조직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표(안)>



<조사 심의 의결 절차>

조사국 → 전문위원 → 소위원회 : 3단계 완결구조

진화위의 활동 경험과 지난 2013년 7월에 개최된 부마민주항쟁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부산, 경남 합동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직제, 조사활동과 업무, 관련법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위원회의 역할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들을 위한 진상규명 조사
- 진상보고서의 작성
- 특별 재심청구
- 진상규명된 자들을 위한 후속조치 : 배보상과 관련재단 지원 방안

### 1. 조직과 직제

위원회의 조직은 크게 의사부와 집행부라는 2개의 구조가 있다. 의사부인 의결구조는 위원장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전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말함이고, 집행부인 집행구조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무국을 이름이다.

집행부의 최고 결재권자는 물론 위원장이 존재하지만, 내부 위임전결규정과 업무 집행구조상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업무의 대부분을 집행한다.

위원회는 3년이라는 단기간에 고도의 집중과 역사적 책무를 필요로 하는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조직과 직제에 있어 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과 조사부장 등이 전략적인 팀워크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이어야 한다.

또한 진화위 제1기의 예에서처럼 지나치게 정치적 입지를 가진 자나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급급한 관료적인 성향의 인사도 철학과 소신 없이 사건 조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제외함을 검토해야 한다.

진화위 제1기의 경우, 위원장 이하 대부분의 임원들이 6개월 이내에 빠른 속도로 관료화 경향을 보이면서, 수평적인 평등 논의구조는 완전히 실종되고 지시와 보고에 의한 수직적 지휘명령체계로 길들여짐으로 인해 조사원 구성원 다수의 생산적인 논의를 담아내지 못한 과거를 빼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실질적으로 집행부인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막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의사발언을 참고로 할뿐이다. 실질적인 집행부의 책임자인 사무국장이 정작 사건조사와 관련된 의결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집행부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사무국장은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서처럼 상임위원을 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또한 사무국장은 그 자격에 있어서 전문성과 함께 조직 운영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수평적

인 평등논의구조에 익숙하고 정부조직과 관변단체에 대한 입장이 대체로 혼들림이 없이 분명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나치게 관료적인 경향은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한다. 이는 한시적인 위원회 구조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어야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가하면 조사관은 전문적이기보다는 사건 전체에 대한 맥락과 함께 역사적 지식과 현신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조사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함께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한 보다 전문적인 분야는 토론과 함께 별도의 자료 분석 전문위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 2. 조사 활동과 업무

### 가. 조사의 형식

조사활동은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진화위의 핵심적인 업무이다. 진상규명은 또한 국가가 저지른 위법한 국가폭력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기에 그 가공할 규모와 형태를 파악해야 하는 조사의 형식이어야 한다.

진상규명을 하는 조사방식은 문헌 및 현지조사를 한 바탕위에서 이를 전수조사하는 방식과 생존한 유족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조사하는 신고주의적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신고주의에 입각한 업무방식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사건조사방식을 신고주의에서 탈피하여 이 두 가지의 방식을 혼용하여 처음부터 직권조사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모든 사건을 신청사건 중심에서 전수조사 형식의 직권조사로 전환이 필요하다.

### 나. 진화위의 사건 심사요령과 기준

진화위의 사건 심사요령과 기준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달라졌다. 이는 사건의 심사요령과 기준이 없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직제는 조사부서와 심의부서가 각각 별도로 편제되어 심의 분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족 여부의 심사, 장애등급 판정 여부의 심사 등을 위해 3단계 검증의 구조를 설정하여, 이를 사전에 심의 의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1) 조사부 2) 전문위원회 3) 소위원회를 거치되 위원회에서는 의결 구조인 전원위원회와 분과위원회와의 역할과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전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집행부로의 위원장만 존재하게 하며, 분과위원회 구조로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의결의 완결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사의 유형이 유족심사와 장애등급판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은 상대 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의결하는 완결구조와 제도가 필요하다. 진화위 제1기에서처럼 위원회가 소위원회 역할을 또 다시 자임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 모두를 소비할 뿐이다.

말하자면, 사건조사는 조사부서가, 사건 심의는 심의부서가 역할분담 체계로 업무 보강과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직제기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 3. 관련 법 주요 개정안

#### 가. 신청사건 중심에서 전수조사 형식의 직권조사로 전환

진상규명은 또한 국가가 저지른 위법한 국가폭력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신고주의에 입각한 업무방식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사건을 신청사건 중심에서 전수조사 형식의 직권조사로 전환이 필요하다.

#### 나. 위원의 임기 – 진실규명 조사활동 기간과 함께하는 3년 단임제

어떤 정부 하에서 운영되는가에 따라 그 활동은 큰 영향을 받는데,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원이 그러하다. 이는 조사방식과 형태, 사건 심의기준, 보고서의 형태, 일반 업무지원의 비중, 위원회 회의 운영방식 등의 모든 위원회 활동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기간이다 보니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하는 성과주의에 급급하여 부실한 보고서를 양산하는데 급급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서 처럼 위원의 임기를 진실규명 조사활동 기간과 함께하는 3년 단임제가 효율적이고 적합하다.

#### 다. 상임위원의 조정 – 1인을 2인으로 조정

상임위원 1인이 유족심사와 장애등급판정을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1인을 2인으로 조정함이 적합하다. 조정된 상임위원은 각각 유족심사와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책임지되, 이중 1인은 사무국장을 겸임함이 예산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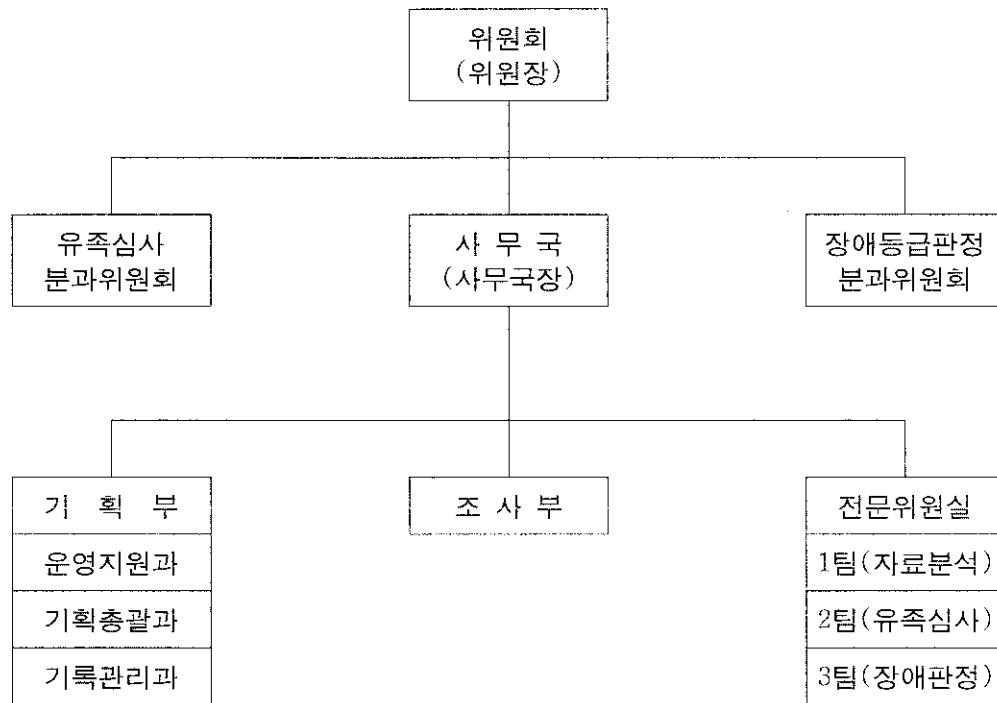
#### 라. 사무국장의 위상 – 상임위원 1인이 겸임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실질적으로 집행부인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막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의사발언을 참고로 할뿐이다. 실질적인 집행부의 수장인 사무국장이 정작 사건조사와 관련된 의결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집행부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사무국장은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서처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상임위원 1인이 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 참고로 이상의 내용을 조직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조 직 표 (안)>



<조사 심의 의결 절차>

조사부 → 전문위원 → 분과위원회 : 3단계 완결구조

<제2부 토론 I>

## <제2부 토론 II>

### 과거청산의 미해결 과제

-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을 중심으로 -

안경호(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

#### 들어가며

식민지 시대에 뒤이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반공을 앞세운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길은 실로 혐난하기만 했다. 우리는 지금껏 일제식민기의 친일문제로부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과 조작의혹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마음먹고 따져보지 못했다. 일정기간 조사는 했지만 그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지도 못했다. 한 역사학자는 국가기구를 통한 과거청산 활동을 평가하면서,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서 아무도 ‘처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한국의 과거청산은 ‘처벌’을 죽여버린 과거청산이라고 자조했다.

지난한 민주화운동 여정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422일 동안 태풍과 혹한기를 이겨내며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하였고, 천신만고 끝에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지만 수많은 의문사가 아직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유족들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의문사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대사이며, 유족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유족은 의문사뿐만 아니라 전쟁전후 학살 피해 유족도 있고, 국가폭력 피해 유족도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이 2010년 말 마무리되었다. 의문사위를 시작으로 국가기구에 민간이 결합하는 방식의 10년간 조사도 종료되었다. 입법을 통한 국가기구 설립과 국가기관에 의한 과거사건 조사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지만, 많은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났다.

피해자와 사건 관련자에 머물던 시민사회 단체가 기관의 자체 과거사위를 비롯하여 각종 과기사 위원회의 활동에 사건 조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경험이자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활동평가를 통하여 향후 과거사 청산 운동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잘 따져봐야 한다. 우리의 역량과 한계를 잘 드러내야 향후 오류를 줄이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조사 사건을 비롯한 과거청산 과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실패의 경험들은 계속 공유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건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분야의 미조사 사건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이 큰 만큼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기를 바란다.

## 1. 진실 규명을 기다리는 인권침해 사건들

의문사 사건의 경우 1기 의문사위에 접수된 사건은 84건으로, 2기 의문사위에서 44건이 재진정 되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40건이다. 이 사건들의 처리결과는 진실규명 4건, 불능 4건, 각하 5건, 조사중지 2건, 이송 1건으로, 나머지 24건은 2010. 1.경 모두 취하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768건으로, 이 사건의 처리결과는 진실규명 238건, 진실규명 불능 41건, 각하 373건으로 그 외 100여 건은 타 기관에 이송되거나 취하 또는 조사중지 되었다.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 사건과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주류를 이루었다.

위원회 활동 중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관련 판결문을 다수 입수하였는데, 이에 비하면 위원회의 신청사건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즉시 재심이 가능한 사건 224건에 비교해도 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은 극히 적다.

확정판결 사건 중 진실위원회가 재심권고 한 사건은 73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발생된 의혹이 있는 확정판결사건 중 일부만이 접수되어 조사 되었고, 그 중 진실규명 된 사건을 중심으로 재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사건 이외에도 국방경비법이나 수산업법, 긴급조치 등의 피해자에 대한 발굴조사도 필요하다.

## 2.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 1) 신청사건 유형별 분류(564건 기준)<sup>11)</sup>

- 확정판결사건(간첩혐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긴급조치, 포고령, 반공법 등) : 134건(24%)
- 강제연행 가혹행위(간첩혐의, 정치적 이유 등) : 131건(23%)
- 강제해직 : 49건(9%)
- 노동권 : 12건(2%)
- 언론자유 : 4건
- 재산권 : 44건(8%)
- 의문사 : 28건(5%)

11) 종합보고서 4권 5~6쪽, 사건의 유형분류 참조. 2006.11.30. 접수종료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송, 취하, 이관사건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수치가 신청건수와 맞지 않음.

- 군의문사 : 28건(5%)
- 전향공작 : 32건(6%)
- 의문사조사위 : 40건(7%)
- 다른 유형의 사건 : 19건(3%)
- 기타 : 43건(8%)

## 2) 사건처리현황

진실규명범위	계	처리건수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조사중지
인권침해	768 <sup>12)</sup>	238 (134)	41 (30)	373 (360)	73	29	14 (11)

\* ()의 수는 실제 사건 수

## 3) 진실규명사건의 후속 처리

- 진실규명 사건 134건 중 73개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이 중 71개 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이 되거나 재심 진행 중에 있다.<sup>13)</sup>
-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의혹사건’, ‘고창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 재심권고가 없음에도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또는 재심 항소심 진행 중이다.
-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진실규명사건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있다.<sup>14)</sup>
- ‘김장길 사건’ 등의 진정사건의 경우, 각하결정 되었으나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되었다.
- 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과 유관한 긴급조치위반사건, 납북어부사건, 재일간첩사건, 특수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및 국방부과거사위 등에서 조사한 일부 사건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되거나 진행 중이다.

## 3. 진실위원회의 미조사 사건 분류

- 1) 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유형별 확인이 가능한 사건에 한해)
- 재일간첩사건 :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회’가 1993년 발표한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는 160명.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회’가 파악하고 있는 재일동포 2~3세 출신의 간첩사건 피해자도 100여명. 이 중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진실규명한 사건은 10여 건, 그 외 수사기록 입수한 사건은 10여 건. 이 중 20여 건의 재심이 무

12) 신청사건 760건, 직권조사사건 8건

13) 무죄확정 후에는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14) 김익환일가 고문가혹행위사건, 임성국 사망사건, 남현진 의문사사건, 문영수 의문사사건, 신호수 의문사사건, 노동사건 등 다수. 사법시험 면접탈락사건의 경우, 불합격은 취소되었으나 손배소송에서는 패소함. 재일교포 북송저지사건의 경우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을 통해 보상금 지급 중임.

죄화정 되거나 진행 중이다.<sup>15)</sup>

○ 납북어부사건 : 위원회에 신청된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은 모두 10건이 진실규명 결정.<sup>16)</sup> 진실화해위원회는 1,327명의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자의 판결문을 입수하였고,<sup>17)</sup> 이 중 1,028명에 대한 기초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352명에 대한 「개인별 피해현황 조사표」를 작성.<sup>18)</sup> 이 중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관련자 28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상정하였으나, 7건의 사건이 직권조사개시 및 진실규명으로 결정되었다.<sup>19)</sup>

### 2) 반공법 등 인권침해 관련법에 의한 피해자 규모

○ 긴급조치위반사건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집한 긴급조치위반 판결문 1,412건(585개 사건)으로 피해자 1,140명. 이 중 200여 명의 재심이 무죄화정 되거나 진행 중이다.

○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집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반공법위반 사건은 3,123개 사건(판결문 6,004건, 피고인수 7,640명),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1961년 이후 2,442개 사건(판결문 4,412건, 피고인수 6,403명),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823개 사건(판결문 2,283건, 피해자 7,945명)으로 나타났다.<sup>20)</sup>

○ 계승연대의문사건특위 등에서 작성한 신청예상 인권침해 관련 사건 499건 중 300여 건 미신청사건이다.

### 3) 확정판결 외 인권침해사건

○ 일반 인권침해사건의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앞의 신청사건 유형별 분류에서 보듯이 강제연행 가혹행위사건이 확정판결 사건 신청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추가 사건접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 4) 재조사사건(의문사, 조사중지 및 일부 각하 사건)

○ 의문사사건 :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총 40건으로 이중 진실규명 4건, 불능 4건, 각하 5건, 조사중지 2건, 이송 1건, 취하 24건으로 처리되었다.

○ 조사중지 : 조사중지 결정된 11건에 대한 조사재개 여부 검토 필요하다.

○ 각하사건 : 각하처리 된 360개 사건 중 상당수가 2006. 3. 전에 처리된 점, 권위주의통치

15) 이종수, 윤정현, 고창표, 김정사, 유자길, 김동휘, 조일자, 허경조, 박박, 강종현사건 등이 진실규명. 이철(민향숙), 이수희, 장영식, 조득훈, 김철현, 김승효, 이원이, 전이칙, 김순일, 이승우, 김오자에 대한 수사기록 입수. 제일양심 수동우회 사건을 신청한 이철은 다른 회원들의 조사를 선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조사중지 결정됨. 이 외 이현치, 이동석, 김원중, 이철, 구말모, 박영식, 김철우 등의 재심이 진행 중임.

16) 태영호, 강대광, 정삼근, 서창덕, 백남욱, 임봉택, 정영, 이상철, 최민준, 임종덕 사건

17) 한편, 「연노별 해상납북 및 송환통계(1987. 국무조정실 작성)」에 따르면, 1954~1987까지 납북된 어선과 선원은 459척 3,651명이고, 「납북귀환 선박 및 어부현황(1987. 치안본부 작성)」 역시 1954~1987까지 납북된 어선과 선원이 459척, 3,648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18) 신상정보, 사건내용, 피해사실, 피해일시, 피해형태, 피해장소, 피해유형, 가해자, 관련자 정보, 피해신청여부 및 이유, 2차피해, 관련자료 소장여부 등 기재

19) 직권조사를 상정한 사건 중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한 사건 외 13건의 재심이 진행 중에 있음.

20) 2005. 6. 경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한 '국가보안법' 검색자료 56,168건, '반공법'으로 검색자료 19,429건, 이 중 중복 사건 9,841건을 제외한 총 65,756건(인원)이 입수되었을 것이나, 전체 현황이 정리되지 못함. 한글표기 판결문으로 구분된 869권(실제 866권)의 목차집에 따르면, 총 22,130건(인원 41,63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중복자료를 제외하고, 반공법 제정시점(1961.7.3.) 및 국가보안법 개정시점(1960.6.10.) 이후 자료에 한한 것임.

시기를 1987. 이전으로 제한한 점 등으로 인해 일부 각하사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

#### 4.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 확정판결 의 사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인권침해사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으로 신청된 다수의 조작의혹사건들은 상당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인정되어 재심사유를 인정받았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정도를 축소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일반인의 인권침해사건을 발굴하기는 힘들더라도 신청된 사건의 축소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권위주의통치시기 : 법제정 당시 ‘권위주의통치시기’는 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노태우 정권시기까지로 한정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sup>21)</sup> 2010. 위원회는 권위주의통치시기를 오히려 1987. 6월 항쟁 이전까지로 하여 ‘동의대 화재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사건’, ‘방양균 간첩조작의혹사건’을 각하 처리했다.<sup>22)</sup> 법제정 당시의 취지를 반드시 살릴 필요가 있다.

○ 신청보다는 직권조사 필요 : 진실화해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발굴과 유형별 접근을 통해 직권조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직권조사를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후속처리에 대한 정리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손해배상소송도 상당수가 진행되고 있다. 재심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판결문모음집 6권이 내부용으로 발간된 일이 있는데, 향후 각 재심 및 소송 관련 자료 등 후속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 5. 미조사 사건 해결을 위해

다시금 과거 청산 문제를 내세우는 이유는,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구 설립에서부터 조사 그리고 후속조치까지 마무리 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과거사는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투쟁의 결과로서 입법이 되었고, 일정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도 사실이다. 성과와 한계를 온전히 드러냈던 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답답함과 무관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기도 했다.

21) 실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1993년 이후 사건은 총 25건으로 24건이 각하, 1건이 취하됨. 1995년 독일 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의 경우 사전조사 결정은 있었으나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2008. 취하하였고, 1994년 신건 수의문사사건의 경우 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각하됨.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후 곧이어 제정된 ‘군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과거사법의 종기 가 권위주의통치시기까지임을 감안하여 시작시점을 ‘1993년 2월 25일’로 하였음.

우리 의지가 반영되어 설립된 각종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지 못했고, 위원회에 진입한 사람들 역시도 활동과정에서 조사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며 저항했던 국가기관과 변변하게 대립각 조차 세워보지 못했다. 또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확인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었다. 위원회 결정의 권위는 선택적으로, 편의적으로 인정하거나 무시되어 왔을 뿐더러 진실화해위원회 막판에는 ‘진실’이라는 표현조차도 다수결에 의한 진실로 폄훼되었으며, 결국 그 ‘진실’은 다수에 의해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한 ‘기능성 진실’이 되었다. 사건도 사건 관계자도 조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도 참담한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내용에 따라 과거사 문제는 질과격이 다르다. 정권의 성격이나 사회의 발전정도에 따라서도 과거사 문제는 그 결이 다를 것이다. 이번 학술행사를 계기로 과거청산의 역사적 흐름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힘도 모아 나가야 한다.

- [별첨] 1. 19대 총선 정책공약 요구사항
2. 과거사 관련 법률의 입법 경과 및 현황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별첨1] 19대 총선 정책공약 요구사항

반인륜·반인권의 과거사를 청산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완전한 과거청산)

【공약】

1. 실질적 과거청산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2.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 과거사 관련 공약 선정 배경

- 일제식민 지배와 해방, 분단과 전쟁, 독재정권기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필요
- 과거청산을 통한 민주발전과 국민통합
-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 작업의 마무리
- 진실규명에 필요한 국가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세부공약】

1. 친일, 독재 등 과거사 청산작업의 마무리
2.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 |  |
|--|
| <p style="margin: 0;">3.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 구제</p> <p style="margin: 0;">4. 위령사업과 연구·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p> |
|--|

### [해설]

#### 1.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 ■ 선정 이유

△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청기간(2005년 12월~2006년 11월)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 대다수 (민간인희생사건 피해자 50~100만 가운데 불과 8천여 건 정도 신청)

⇒ 민간인희생사건의 경우 '연좌제 피해'와 '집단희생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여전한 것이 현실임.

⇒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는 시·군 단위로 볼 경우, 고양시와 강화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1건~5건을 넘지 못하며, 대량 피해가 확인됨에도 신청사건이 1건도 없는 곳(예, 안성, 이천 등)도 있음.

⇒ 진실규명된 사건의 경우도 같은 지역 내에서 신청 시기를 놓친 유족이 많음. 충북 괴산군 불정면의 경우 희생자가 70명이 넘지만 신청한 주민은 10명으로 60여 명의 유족이 추가조사를 기다리고 있음.(유족 윤판로 증언) 전남 보성, 함평, 해남의 경우도 신청하지 못한 많은 유족이 있음.

⇒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2만 건이 넘으나, 진실위원회에 접수된 768건 중 238건이 진실규명 결정, 41건이 불능, 373건이 각하 처리 되었으며, 확정판결 사건 중 재심권고를 받은 사건은 73건에 불과함.(진실화해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참조)

△ 민간인희생사건의 경우, 미군폭격사건, '비상조치령' 등 위헌적 법률에 의한 재난을 통한 희생사건 등 각하, 미군폭격사건 자료 및 조사미비로 인해 각하 또는 불능 결정된 사건이 많

진실규명범위	계	처리건수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총계 (%)	11,175 (100.0)	8,450 ( 75.6 )	528 ( 4.7 )	1,729 ( 15.5 )	351 ( 3.1 )	97 ( 0.9 )	20 ( 0.2 )
항일독립운동	274	20	23	221	10		
해외동포사	16	5		8	1		2
적대세력관련	1,774	1,445	10	292	22	1	4

민간인집단희생	8,206	6,742	454	764	242	4	
인권침해	768	238	41	373	73	29	14
기타	137			71	3	63	

※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2005~2010)

음.

⇒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8,206건 중 불능 454건, 각하 764건임.(『종합보고서』 1권, 32쪽)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르면 조사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함.

⇒ 2009년~2010년 6월 처리된 사건이 7,148건으로 전체 11,175건의 64%임(『종합보고서』 1권, 33쪽)

1.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2. 민중을 억압한 역사에 대해 국가는 기억할 의무를 지닌다.
  3. 국가는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사법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4. 비사법적 조사위원회는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지닌다.
  5. 국가는 책임성을 공개 인정하고,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식 선언을 발표하며, 희생자에 대한 정례적인 추도를 해야하며, 중대 인권 침해 사실을 역사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 「중대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 중에서(1996년 유엔인권소위원회 제출)

## ■ 목표

- △ 국가차원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과거청산 대책 수립
-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 △ 국가기관의 성찰과 탄성을 통한 신뢰 회복

## ■ 방법

- 국가차원의 확고한 과거청산 의지 천명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과거청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실행 방안 마련
- 완전한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국가 조사기구를 재설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 2. 추모, 위령사업과 연구·조사, 피해자 치료사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 ■ 선정 이유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당시 전국 168개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39개소를 우선 발굴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 중 13개 매장추정지를 발굴한 결과 1,617구의 유해와 5,600여점의 유물을 발굴

⇒ 유해발굴은 일부 유골만 수습된 채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고, 발굴된 유해는 충북대학교 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되어 있는 실정(2016년 7월까지 안치 계약)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안치되어 있던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청아공원으로 안치

⇒ 진실화해위원회의 용역 조사 결과 전국 66개소에서 유해 발굴이 가능

⇒ 진실규명된 사건들도 위령탑이나 추모역사관 건립이 미뤄져있고, 유해 안치시설이나 추모 공원 건립도 요원한 상태이다. 유족 스스로 발굴한 경기도 고양의 경우, 유골을 영구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충돌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임시로 청아공원에 보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진실화해위원회, 2009.10.7.)

△ 위령제 또는 추모제에 대한 지원은 각 자체의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실정

⇒ 국가 차원의 사과도 없고,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 무시

⇒ 청원 옥녀봉 국민보도연맹사건처럼,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사건은 자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위령사업 추진 불가능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이후 정부 및 자체 차원의 연구·조사 사업이 없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불이행

△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진실화해위원회, 2009.8.21)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은 화해와 기록·기념사업, 조사·연구 사업, 발굴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사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출(2011.6.24. 장세환 의원 등 11명 발의)

⇒ 연구, 유해 발굴, 위령사업 수행, 진실규명 불능결정사건 추가 조사 업무

⇒ 재단 조사결과의 신뢰도 문제는 제고

△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가혹행위로 인한 고문피해자 등 정신적, 육체적 치료 필요

## ■ 목표

- △ 국가책임 인정과 후속조치 마련
- △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및 위령사업
- △ 연구·조사·교육·출판 등 사업을 통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구조 규명
-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책수립

## ■ 방법

-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제한 없는 피해신고와 조사, 법적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 병행
-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시효 배제
-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재심 확대
- 국가의 사과와 반성, 인권의식 제고와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 제도화
-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민간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
- 입수, 생산된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기타 기념 및 추모사업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등에 대한 계획수립
- 발굴된 유해의 영구적 안치와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평화공원 조성
-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치료센터 설립
- 인권교육과 교과서 수록, 권고처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

## 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조치 법제화

### ■ 선정 이유

- △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원상회복 조치  
⇒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6.30) 이후 소송 증가 추세  
⇒ 소송비용이 없는 유족의 경우, 국가배상 민사소송 제기의 어려움  
⇒ 보·배상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족은 소송 외 다른 수단과 방법 전무
-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특별법」 제정을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  
(2009.8.21. 진실화해위원회)
-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2011.11.17. 이낙연 의원 등 16명 발의)  
⇒ 국무총리 산하와 각 시도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 지급

-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2010.12.14. 이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2011.7.4. 조경태 의원 등 20인 발의)  
⇒ 두 법안 모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보상 지원

- △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2010.2.26. 허원제 의원 등 22인 발의)  
⇒ 1980년 신군부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 배상조치

### ■ 목표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보상 및 배상
- 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 각종 위법한 인권침해, 범죄조작 의혹사건 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 ■ 방법

-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 배상
- 납북어부, 재일동포, 긴급조치, 부마항쟁, 언론인해직 등 시기와 성격 등이 같은 사건들의 경우, 특별법을 통한 일괄 보상 및 배상 조치

## 4. 친일, 강제동원 등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사업의 복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2005.12.29.)에 근거한 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조사하지 못한 사안이 남아 있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국고 귀속문제는 실태파악이 시급
- 법무부 차원에서 계속 조사하여 국고귀속을 할 수 있는 상설반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물론 일본인 명의의 재산도 국고로 귀속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 ■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법의 개정

- 현재 6개월 단위로 조사기간 연장하여 진상규명의 연속성이 없고, 진상규명 신청 마감도 2012년 6월에 마감되어 활동 종료단계
- 그동안 피해 실태의 1/10도 진상규명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가 필요

## ■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복지재단 설립

- 한일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 중 일부는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재산
- 무상 3억달러 대부분이 중공업 육성과 포항제철(포스코) 건설에 투자.
- 포스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실태
- 노무현 정부 당시 개별 보상은 끝났으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의료와 요양 등이 제공되는 집단적 보상의 방안으로 시설(재단) 설립

## ■ 재외사할린동포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 사할린동포 관련 법안 처리 및 민족적·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법의 제정 필요

[별첨2] 과거사 관련 법률의 입법 경과 및 현황

## | .1990년 이후 과거 청산 관련 입법<sup>23)</sup>

### □ 노태우정부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8.6.)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변경(2006.3.24.)

### □ 문민정부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sup>24)</sup>(1993.6.11.)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1995.12.21.)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12.21.)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1996.1.5.)

### □ 국민의 정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0.1.12.)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2000.1.12.)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sup>25)</sup>(2000.1.1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7.24.)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1.26.)

### □ 참여정부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2004.1.2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4.1.29.)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3.5.)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3.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sup>26)</sup>(2004.3.5.)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sup>27)</sup>(2004.3.22.)

23) 공포일자 기준

24)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2.12.11.)

25) 2009. 4. 1. 폐지

26)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폐지(2010.3.22.)

27)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 2005.1.27.)

- 6·25 전쟁 중 적후방 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4.3.2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2005.5.31.)
-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5.7.29.)
-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4.27.)
-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회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sup>28)</sup>(2007.12.10.)

#### □ 이명박 정부

-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08.3.28.)
- 6·25 전쟁 남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남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3.26.)
- 대일 항쟁 기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회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5.30.)
- 재일 교포 북송 저지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1.5.30.)

#### ※ 폐지 법률

- 의문사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2009.4.1.)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3.22.)
-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회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3.22.)
- 군의문사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p>29)</sup>(2010.5.25.)

## II.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입법 과정

### 1. 과거사법 관련 법안 발의

#### 가. 관련 법안 발의 배경

- 2004. 1경 의문사진상 규명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그 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독립된 한시적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권고
- 2004. 8. 15. 노무현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포괄적인 과거 청산 구상’ 밝힘.

28) 대일 항쟁 기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회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2010.3.22.)

29) 군의문사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31.>

○ 관련 법안에 대한 세 가지 논의가 있었음.

첫 번째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두 번째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안, 세 번째는 군의문사를 포함한 포괄적 과거사법의 제정에 대한 안이었음.

나. 2004. 발의된 법안

- 2004. 6. 16.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sup>30)</sup>(김기현의원등 11인)
- 2004. 6. 30.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sup>31)</sup>(원희룡의원 외 93인)
- 2004. 8. 9.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sup>32)</sup>(권경석의원등 17인)
- 2004. 9. 23.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sup>33)</sup>(유기준의원 외 120인)
- 2004. 10. 20.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원해영의원 외 150인)
- 2004. 10. 21.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sup>34)</sup>(이영순의원등 10인)
- 2004. 11. 9.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문병호의원등 12인)

2. 과거사법 입법 과정(국회 논의 과정 중심으로)

- 2004. 11. 경 국회 국방위원회 군의문사법 심의 진행 : 심의에 앞서 군의문사를 포함한 과거사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법에 대한 논의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잠정적 논의 중단
- 한나라당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과거사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에 현대사법도 같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2004. 12. 9. 두 상임위에 안건 상정
-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 한나라당 불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참여 회의진행<sup>35)</sup>

30) (제안이유)군복무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 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

31) (제안이유)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범위를 강화·보완... 군의문사 사건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회생되었으나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시정...

32) (제안이유)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을 명시

33) (주요내용)조사·연구대상에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와 학살, 친북·이적활동도 포함, 대한민국학술원산하에 현대사조사 연구위원회를 두며, 현대사조사연구소를 두고 연구기획조정실, 독립운동조사연구실, 해외동포조사연구실, 국가공권력남용조사연구실, 친북이적조사연구실에서 각각 해당 실무를 담당하도록 함.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을 마친 날부터 6년간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년의 범위에서 연장

34) (주요내용)국가주권 상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되고 온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기기구로 진실·미래위원회를 둠.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업무를 하는 진실규명위원회와 국민화해 및 사면 등의 일부를 하는 미래위원회를 두며, 각각 소관업무에 필요한 조사지휘와 결정권을 갖도록 함 등

35) 당시 조사법위 중 종기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결국 종기를 넣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가 후에 한

- 과거사법 포함 4대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4자회담<sup>36)</sup> 진행 : 과거사법은 8인특위<sup>37)</sup>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8인특위 중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과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이 여야합의를 위한 타협안 준비, 한나라당에서 친북이적활동에 대한 조사요구로 인해 최종합의 무산
- 열린우리당은 2004. 12. 31. 국회의장 직권으로 과거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박기춘 의원 외 149인이 발의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수정안<sup>38)</sup> 제출, 김원기 국회의장 직권으로 과거사법 처리 연기
- 2005. 3. 2. 이원영의원 등 32인이 박기춘안을 일부 수정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수정안<sup>39)</sup>을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과거사법이 상정되지 않음
- 2005. 5. 3. 정세균의원 등 6인 외 228인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수정안 제출 : 본회의 통과<sup>40)</sup>

### III.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경과

19대 총선 직후, 과거사 관련 주요 활동가 워크숍 개최

- 진실위 전직 위원, 조사관 모임을 통하여 과거사법 개정 논의(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과거사연설회의’ 구성)
  - : 2012. 5. 9. 진실화해위원회 평가 토론회
  - : 2012. 5. 23. 미해결과제 관련 토론회
  - : 2012. 6. 12. ‘진실정의 포럼’ 등 전문가 집단과 간담회 개최
  - : 2012. 7. 5. 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특위’로 조직형태 변경
  - : 2012. 9. 17. 국회 현정기념관 토론회 개최
  - : 2012. 10. 5. 국가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 활동 재개촉구결의안(인재근 의원 외 127인)
  - : 2012. 11. 15. 국회 입법토론회 개최

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면서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이 연기됨.

36)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37) 열린우리당 강창일, 노현송, 문병호, 박기춘의원, 한나라당 권철현, 이안기, 유기준, 이명규의원

38)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포함, 확정판결사건 제외(제3심사유 단서), 조사방법 축소(통시사실조회, 암수수색·검증 영장청구의뢰, 청문회 조항 삭제) 등

39) 박기춘 안 중 확정판결사건 제외(위원회 의결 단서)조항과 조사방법에서 청문회 조항 추가

40) 재석의원 250명 중 159명 찬성, 73명 반대, 18명 기권

- : 2012. 12. 4. 유가족 및 관련단체 끝장토론회 개최
- : 2012. 12. 18.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발의(이낙연 의원 외 35인)
- : 2013. 8. 13.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
- : 2013. 10.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발의(진선미 의원 외 52인)
- : 2013. 11.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발의(이재오 의원 외 14인)
- : 2013. 11. 20. 국회 과거청산 정책포럼 개최
- : 2013. 11. 27. 과거청산 관계자 전체 간담회 개최
- : 2013. 12.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발의(서영교 의원 외 14인)
- : 2013. 12. 17. 장준하사건 등 진실규명과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청산특별법 발의(유기홍 의원 외 104인)
- : 2014. 1.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발의(강창일 의원 외 11인)
- : 2014. 2.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출범
- : 2014. 2-3. 한국전쟁민간인학살 1차 유해발굴(진주시 명석면)
- : 2014. 4.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발의(김태원 의원 외 10인)
- : 2014. 5. 21. 손해배상 등 국가책임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 : 2014. 8.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김성곤 의원 외 13인)

### [별첨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b>제1장 총칙 제1조(목적)</b> <p>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b>제2조(진실규명의 범위)</b> <p>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이 법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삭제 2. 삭제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망·상해·실종 등 민간인 학살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1993. 2. 24. 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삭제  6.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b>제3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b>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li><li>조사의 진행</li><li>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li><li>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 활동 등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li></ol>	<p>4.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구성을 위한 활동 등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p>
<b>제7조(위원장의 직무)</b>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p>
<b>제19조(진실규명 신청)</b>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b>제23조(진실규명 조사 방법)</b> <p>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li><li>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li></ol>	<p>6.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 추가</p>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제24조(동행명령 등)

제24조의2(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 제2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제외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본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를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을 "위원회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상규명 사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진상 규명 신청인 및 조사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국민화해 또는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계 국가 기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4조3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p>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u>제24조의5(공소시효 정지)</u> 위원회가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상규명사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상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p> <p><u>제24조의6(재정신청에 관한 특례)</u>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 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신청인으로 본다.</p>
--	---

## 제25조(조사기간)

-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 ①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제27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 ①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제27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다. 다만 배상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③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 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① 정부는 추도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 연구재단을 활동종료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 ② 좌동

-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추도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유해발굴 및 봉안 사업의 지원
5.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치료사업
6. 교육, 연구 및 대국민 홍보, 교류사업 추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제45조(별칙)**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④ 좌동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제23조제1항5의 규정에 의한 감정을 허위로 한자

4. 위력 또는 위계로써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 조사를 방해한 자

5.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자

6.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7. 제24조의2 규정에 의해 증인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

②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제3조(경과조치)**

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① 종전의 위원회에서 조사중지, 진실규명불능결정 등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종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하여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된 자료는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승계, 관리한다.

## 부마에서 광주로: 민주항쟁의 사회운동사적 이해를 위한 시론\*

나간채(사회학/전남대 명예교수)

### 1. 서언

부마항쟁을 생각하는 10월을 맞이하여, 이 글은 그 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 보는데 그 뜻이 있다. 마치 5월이 오면 광주가 그려하듯이. 여기에서 역사라 함은 과거의 사건이 갖는 의미와 이념이 그 독특한 고유함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의미 한다<sup>41)</sup>. 다시 말하면, 부마항쟁의 전후 맥락을 살펴 한국 사회운동 발전의 역사에서 그 항쟁의 위치가 어디쯤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물론 부마항쟁은, 발발 이후 30여 해를 지내오는 동안, 다양하게 진행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일정한 수준으로 정리되었고, 그에 따라 인식의 진전이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항쟁 발발의 배경과 원인, 주체와 진전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해명이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항쟁은 1960년대 군사독재시기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흐름에서 그 힘과 열기가 가장 뚜렷이 폭발했던 활화산이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잔혹했던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70년대를 마감하면서 80년대 사회운동의 앞날을 예고하는 전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부마항쟁을 다시 사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론과 현실의 두 현장에서 그 답을 확인한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의 나열을 썹고 또 썹어서 거기서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절을 내보자는 것을 역사쓰기”<sup>42)</sup>라고 말한 선배 사학자의 중언을 답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 동안 부마항쟁에 관한 연구가 일정 정도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깊고 넓게 캐보아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항쟁을 더욱 위대한 역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의 위대함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후대 역사가의 거듭된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항쟁에 대한 연구결과의 평가에서 드러나는 경향의 하나는 부마항쟁에 관한 연구결과가 광주항쟁의 그것에 비해 우선 양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강조되곤 했다<sup>43)</sup>. 이와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배경과 직접적인 원인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고, 그럴듯한 변명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요구되기도 했다.

우리가 부마항쟁을 되돌아보는 다른 이유는 삶의 현장에도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 이 글은 2013년 부마민주항쟁 34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부마에서 광주로—대안적 가설을 찾아서’를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41) 신채호(박기봉 옮김),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1972, 24쪽.

42)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2011, 16쪽.

43) 임현진, 「다시보는 부마항쟁—잊혀진 민주화의 유산과 역사적 의의」, 『사회이론과 사회변혁—김진균 교수 정년기념논총1』, 도서출판 한울아카데미, 2003, 337쪽; 손호철, 『해방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도서출판 이매진, 2006, 165쪽; 김상봉,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부끄러움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30주년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도서출판 대성, 2009, 131쪽; 조정관,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도서출판 대성.

사회현실이 부마항쟁에 관한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 항쟁이 터지던 시대상황을 연상하는 언어가 거리를 부유하고, 다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이 지금 우리 영혼을 적시고 있기 때문이다.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이 탁류 속에 착한 시민을 절망하게 만드는 척박한 정치사회와 신명<sup>44)</sup>의 힘을 잃은 운동사회가 다시 부마항쟁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가 부조리와 모순에 찬 과제해결을 위해 사회운동에게 그 답을 요구하는 것을 나는 지지한다. 우리의 현대 사회운동사가, 비록 큰 아픔 속에서도,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유신의 암흑기를 만났을 때 허다한 지식인과 청년학생들의 수난 속에 민주주의의 새벽 강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80년대 야만의 권력을 마주했을 때는 거대한 민중의 격류 속에서 더 많은 청년학생들이 생명을 바친 저항의 시대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아침에 이를 수 있었던 사실이 그 본보기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의 흐름 가운데 한국 사회운동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 수준에서 주목받아 온 사실도 거론할 만하다. 홍콩시립대학의 한 짚은 교수는 19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청년학생들의 자결투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필자에게 표명한 바 있다(1999).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시게모토 교수팀은 광주의 시민연대과 서울의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현장을 관찰한 후, 한국 시민운동의 역동성이 주는 신선한 충격을 고백한 바 있다(2003).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F. Basil 대표는 5·18민중항쟁과 5월 운동을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교과서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2008), 세계적인 수준에서 사회운동을 연구해왔던 G. Katsiaficas 교수는 한국의 민중항쟁에서 실현된 ‘원초적 사랑과 해방의 열정’eros effect에 깊은 감명을 숨기지 않았으며, 한국의 항쟁이 아시아 제 국가의 민주항쟁에 준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부마항쟁을 광주항쟁과의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연구결과의 보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제안이다. 항쟁에 관한 우리 사회의 연구결과들에서 개별 항쟁에 관한 연구는 일정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항쟁들 간의 관계와 연계성 또는 연속성의 측면에 관한 성과는 다소 희소한 편이어서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역사적 차원에서 항쟁 진화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며, 실천적으로는 현실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한 응답이 계기를 암시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2.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가 다루는 주제는 사회운동의 한 유형으로서의 항쟁이다. 원론적으로 사회운동이란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직화된 행위이다. 핵심적 특성은 비제도적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에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는가 하면, 아직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행위도 포함한다. 전자가 법이 정한 행동방식을 벗어난 초-규범적 행위라면, 후자는 유행이나 신흥종교운동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행위양식으로서 아직 규칙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사례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형태,

44) 박은식(김승일 옮김), 『한국痛(통)사』, 범우사, 1915(1999), 42쪽.

45) Katsiaficas, G., *Asia's Unknown Uprisings Vol. 2*, Oakland: PM Press, 2013.

즉 현실의 규범이 정하고 있는 행동방식을 벗어나서 집단적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 즉 초-규범적 행위로 한정한다.

이와 같은 초-규범적 행위는 기존 규범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항과 도전의 행동이다. 저항과 도전행위는 그 성격에 따라 집회 및 시위나 점거농성, 봉기, 폭동, 반란, 혁명 등의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혁명을 기준 체제에 대하여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성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경우에, 항쟁은 혁명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초-규범적 저항의 집합행동이다. 이렇게 볼 때, 항쟁이 갖는 개념적 특성은 기득권의 독점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공공선이나 공동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저항이고 도전이기 때문에 대체로 불리한 상황에서 전개될 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성이 높지 않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한 자기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인간사회 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역사에서 보면, 허다한 항쟁이 있어 왔다. 고려시대 삼별초의 대동항쟁, 조선시대와 한 말에 일어났던 농민항쟁이나 의병항쟁, 해방 후에 이르면, 대구의 인민항쟁이나 제주의 4·3항쟁 등이 그 사례가 된다. 여기에서는 연구범위를 비교적 최근의 민주화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으로 한정한다. 이 두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에서 가장 높이 타올랐던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후의 운동사에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앞길을 비춰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해 둔다. 그 하나는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밀도가 높은 시간의 연속으로서 ‘10.26 사건’과 ‘12.12쿠데타’, 그리고 ‘서울의 봄’과 ‘5.17쿠데타’가 밀집하여 중간에 일어났다. 따라서 두 항쟁의 성격이나 상호연관 및 연계적 성격의 해명에 있어서 이 중간 시점의 사건들이 두 항쟁에 대하여 갖는 작용과 그 효과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거듭된 군사반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해석 및 역사적 평가도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의 봄은 두 항쟁을 연결 또는 매개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봄을 여기서는 하나의 항쟁으로 보려한다. 놀라운 열기로 타오른 거대한 젊은 열정과 그 지속과정, 그리고 돌연히 식어서 막을 내린 항쟁의 정체를 더 깊이 파헤침으로서 그 운명이 갖는 의미를 천착하는 일이 운동의 역사정립에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주항쟁과 관련된다. 흔히 광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10일간 지속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와 달리, ‘시간적으로 확장된 인식’을 제안한 바 있다<sup>46)</sup>. 광주항쟁이 1980년 5월 27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 날 아침에 시민군 근거지가 계엄군의 공격에 의해 점령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도 시내 도처에서, 그리고 시 외곽에서는 접전이 계속되었고, 이와 아울러 체포되어 구속된 활동가들은 영창에서 항명과 단식농성 등의 집합적 저항이 이어졌다는데 있다. 더 나아가서 이 항쟁은 5월 27일을 전환점으로 하여 광주라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서울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서강대 학생 김의기는 5월 30일에 종로 5가의 기독교 회관에서 광주항쟁을 애도하며 투신 자결했고, 노동자

46) Kahn-chae Na, “A New Perspective on the Gwangju People’s Resistance Struggle: 1980~1997,” *New Political Science*, Vol. 23, No. 4(Philadelphia: Carfax Publishing, 2001), pp.477~491;

김종태는 6월 9일에 같은 이유로 신촌에서 분신자살을 결행했다. 1980년 12월 9일에 있었던 광주 미국문화원방화사건에 뒤 이어 터진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1982), 대구 미문화원폭발사건(1983), 서울 미문화원점거사건(1985)은 광주항쟁의 연속이었다. 저항의 물결은 더욱 거세져서 해마다 광주항쟁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5월행사가 전 국민적 참여 속에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sup>47)</sup>.

다음에는 설명방법에 관한 것이다. 앞의 두 항쟁에 관한 사회과학적 설명은 3가지 방법(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각각의 개별 항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각 항쟁이 갖는 특성들을 사실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그 사실이 갖는 고유한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 특수성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비교를 통해서 동질성과 차별성을 규명하려 한다. 이 경우에 흔히 역사학의 개별 특수적 접근과 사회학의 일반화 방법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화를 거부하고 특수만을 취급한다는 것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엄격한 법칙을 역사현상에서 구성해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선행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중요한 암시와 시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혁명은 프랑스혁명을 교훈으로 삼았고 카우츠키 대신에 스탈린을 선택한 것은 나폴레옹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면 안다<sup>48)</sup>. 이러한 사실은 역사현상에 대한 법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연성이고 경향성의 수준이지만, 역사연구에서도 과거사로부터 의미 깊은 암시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단순 비교의 수준을 넘어서 상호연관성 또는 연계성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제목으로 제시된 ‘부마에서 광주로’라는 주제는 두 항쟁 간의 연계성에 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이어짐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시기구분의 관점에서 ‘부마항쟁의 시작에서 광주항쟁의 장엄한 패배까지는 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운동기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이 동일한 궤도에 놓인 연속적 사건이며, 서로 뗄 수 없는 사건’이라는 표현이나<sup>49)</sup>, 시간적 선후관계의 맥락에서 ‘부마항쟁이 없었으면 서울의 봄이 있기 어려웠고 서울의 봄이 없었으면 광주항쟁도 있기 어려웠다’는 견해 등이 이에 속한다.<sup>50)</sup>

두 항쟁 간의 연계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경험적 자료수집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는 관련 기록물이나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이 포함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사실적 연계성의 양상이 드러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더 심층적인 수준으로 분석과 해석이 진전될 수

47) 나 간채, 『한국의 5월운동』,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2;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만들기』,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3. 이와 같은 인식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광주항쟁이 5월 27일에 끝났다는 인식은 시민(군)의 관점이 아니라 학살의 주역인 계엄군과 정부의 관점이며, 이는 항쟁의 패배를 강조하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확장된 인식은 더 광범한 의미를 갖는다. 광주항쟁이 국지적인 저항이었다면 5·18항쟁은 전국적인 항쟁으로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며, 전자가 단기간의 무장투쟁이었다면 후자는 장기간의 비무장 진지전 성격을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식은 1980년 5월에 시작된 항쟁은 패배한 항쟁이 아니라 승리한 항쟁이 되는 의미를 갖는다. 나는 이러한 해석이 승리한 항쟁의 역사를 만드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48) E. H. Carr, 1962(길현모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탐구당, 1999, 102-106.

49) 한홍구, 「풀라운 봉괴, 거룩한 좌절」, 『부마민주항쟁30주년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도서출판 대성, 2009, 188-189쪽.

50) 조정관, 「한국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009), 83-84쪽.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사실적 연계성으로부터 구조적 연계성이나 추상적 가치이념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의미연계성으로 확장시킴으로서 항쟁의 역사정립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광주의 몇몇 연구자들은 수차례 모임을 갖고 ‘부마에서 광주로’라는 연계성의 명제에 대한 경험적 검증가능성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다<sup>51)</sup>. 이 토론토모임에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상호관련성에 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두 항쟁에 관한 직접적 연계성을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못했다<sup>52)</sup>. 그리하여 하나의 대안적 가설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매개하는 중간적 요인으로 ‘서울의 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부마에서 광주로’의 가설을 ‘부마에서 서울의 봄을 경유하여 광주로’라는 형식으로 변환한다는 것이다.<sup>53)</sup>

물론 이 대안 가설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마항쟁은 10·26정변이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부마항쟁의 효과가 서울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권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마항쟁 후인 1980년 4월 19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4·19혁명 20주기 선언문에서 ‘10월 부마항쟁’을 직접 거론했으며, 5월 초에 있었던 연세대 시국선언문과 성균관대 비상총회의 결의문에서 ‘부마민주항쟁’ 및 ‘부마의거’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음은 ‘서울의 봄’에 대한 ‘부마항쟁’의 직접적인 영향, 즉 연관성 또는 내적 연계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sup>54)</sup> 또한 부마항쟁 이전부터 서울의 대학생이 부산이나 마산에 왕래하거나 소통한 자료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재경마산학생회 등).<sup>55)</sup> 이는 부마항쟁 이후에 그 항쟁의 여파가 서울지역 사회운동권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광주항쟁의 경우에도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광주항쟁에 참여하다가 희생당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주항쟁에서 사망한 유동운(한신대학교 재학생), 그리고 광주의 진실을 목격하고 상경했던 김의기(서강대 재학생)가 항쟁 직후인 5월 30일 종로5가 기독교 회관에서 투신자결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서울과 광주항쟁의 직접성 연계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sup>56)</sup> 이와 같은 부분적인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두 항쟁 사이에 존재하는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계성을 경험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 3. 이론적 검토

51) 이 모임은 2011년에 김상봉(사회철학), 김재관(정치학), 민병로(법학), 박해광(사회학), 윤영덕(정치학), 나간채(사회학) 등이 참여하였으며 4~5회의 토론토모임을 가졌다.

52) 물론, 부마항쟁 이전에 광주의 활동가를 포함한 전국의 운동가들이 가진 회합이나, 광주의 활동가가 부마항쟁이 종료된 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정리하고 광주에서의 대응책을 고민한 혼격은 보였다. 윤한봉,『운동화와 뚱 가방』, 도서출판 한마당, 1996, 43쪽.

53) 여기에서 이 대안적 가설을 제기한다는 것이 다른 대안 가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토모임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부마에서 진주를 경유하여 광주로’ 또는 ‘부마에서 대구를 경유하여 광주로’ 등의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54) 차성환,『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15쪽, 14~15쪽.

55) 주대환, 정성기 중언(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1),『부마민주항쟁증언집-마산편』, 창원: 불휘미디어, 643~668, 541~574).

56) 나간채, 앞의 책, 53, 54쪽.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에 관한 연계적 연구의 이론적 기초 작업에는 기존 연구 실태에 대한 검토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이론구성이 포함된다. 먼저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검토한다.

부마항쟁에 관한 자료수집과 정리 및 연구활동의 시작은 전문연구자들보다는 활동가들에 의해 선행되었다. 소식지나 팜플렛 형태로 제시된 체계적인 정리작업은 부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가 부마항쟁 5주년 기념으로 간행한 <새벽함성(창간호)>에 게재한 ‘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항쟁일지(1984)’가 시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57)</sup> 뒤 이어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펴낸 <10월 부마민중항쟁사>(1985), <마산문화> 제4집에 실린 ‘10.18마산민주항쟁의 전개과정’(1985) 등이 초기 활동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료는 기념사업회가 펴낸 <부마항쟁10주년 기념자료집(1989)>과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가 펴낸 <부마에서 광주까지(1990)> 등이 있다.

전문연구자의 성과물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 활성화되었다. 부산민주화운동사 편찬위원회가 기획하여 전문학자들이 집필한 <부산민주화운동사(1998)>가 간행되었고, 부마항쟁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한국민주주의> 및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에 관한 논문들이 부산과 마산에서 발표되었다(1999). 다음 해인 2000년에는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한 학술회의(‘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에서 부마항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3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서가 출간되었다.<sup>58)</sup> 그리고 30주년에 나온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에서는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사회 밑바탕의 정서, 항쟁주체의 성격, 광주항쟁과의 비교와 한국 민주화에서의 역할 등에 관한 논문 6편이 수록되어 있다.<sup>59)</sup>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집합적 성과물에 한정된 것이고, 이 밖에도 다수의 개인 연구자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최근에 간행된 증언자료집<sup>60)</sup>은 항쟁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부마항쟁으로부터 7개월 뒤에 폭발한 광주항쟁에 관한 연구실태를 검토한다. 광주항쟁에 관한 초기의 연구활동도 부마항쟁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이 사회운동가들의 주도하에 보고서나 팜플렛 등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1984년에 펴낸 『민주화의 길』은 광주항쟁 4주년 특집호로 간행되었고,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의 기관지 『광주』(1985), 그리고 전남사회문제연구소가 펴낸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1988) 등이 그 사례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5·18이 금기시되던 1985년에 항쟁의 전모를 비밀리에 재구성하여 작성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복사본으로 읽혀지다가 마침내 출판되자 전량이 압수처분을 받았으나 전 대학가에서 널리 복사되어 읽혀졌다는 것이다.<sup>61)</sup>

광주항쟁에 관한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는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진전되기 시작했다. 6편의 논문이 발표된 광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이를 선도했다.<sup>62)</sup> 그 후 1995년의 “반인륜행위와 청산”에 관한 국제심포지엄<sup>63)</sup>은 광주시민연대가 주관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5·18기

57) 부마항쟁의 연구 성과는 주로 다음을 참고했음. 차성환(2009, 15-49쪽).

58) 민주공원, 『부마항쟁연구논총』, 한글마당 나큐스, 2003. 여기에는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과 양서조합운동과의 관련성, 광주항쟁과의 비교 등 10편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59)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마항쟁30주년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도서출판 대성, 2009.

60)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증언집-마산편』, 창원: 블휘미디어, 2011.

61) 황석영 기록,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서울: 도서출판 풀빛, 1985.

62)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 서울: 도서출판 풀빛, 1990.

념재단은 한국정치학회(1997), 한국사회학회(1998), 한국학술단체협의회(1999)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5·18항쟁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관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이밖에 다수의 연구성과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제출되고 있으나<sup>64)</sup>,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광주항쟁에 관한 총체적인 측면을 집대성한 성과물로 각계 전문가 33인이 집필한 <5·18민중항쟁사><sup>65)</sup>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단행본 이외에 5·18연구와 직접 관련된 정기간행물로 5·18기념재단의 학술지 <아시아 저널>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학술지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증언자료집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성과는 광주항쟁 피해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2년여에 걸쳐 증언을 채록하여 방대한 자료집으로 엮어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이다<sup>66)</sup>.

두 항쟁에 대한 연구결과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드러나는 전체적 성격은 사회과학에서의 중요한 기본 주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어 졌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사회경제적 정치적 배경, 발생원인과 진전과정, 주체구성과 항쟁의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 의의에서는 7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을 민중항쟁의 형태로 끌어올리면서 마무리한 점이 강조되었고, 두 지역에서 유사하게 작용한 정치적 배제의 요인과 사회경제적 낙후성 및 문제점이 분석되었다. 진전과정에 관한 연구도 두 항쟁에서 핵심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항쟁 주체의 구성과 그 변화양상에서도 초기의 학생주도성으로부터 뒤 이어 기층 민중과 시민의 참여양상이 강조되었다. 또한 항쟁 자체의 성격규정에 관한 문제도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연구결과의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개별 항쟁에 관한 연구를 넘어서 두 항쟁에 관한 비교연구와 연속적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사례를 주목하는 이유는 상호관계 및 연속적 계승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항쟁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항쟁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일이 항쟁연구의 발전에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두 항쟁을 하나의 통일적 인식틀에서 포착하여 그 연계성 규명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

이와 같은 통일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배경에는 두 항쟁 설명의 핵심 변인이 되는 항쟁주체(민주시민)과 억압주체(국가)에 일정한 동질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그것은 도전주체로서의 항쟁세력과 억압주체로서의 군부 파시즘으로 요약된다.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확인되는 특성들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이 두 항쟁에서 보여준 민중의 투쟁력은 경찰에 의해 진압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민중이 갖는 거대한 힘의 본질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된 항쟁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둘째, 이에 따라 지배 권력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잔혹한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했던 바, 이것은 계엄령으로 현실화되었다. 이는 공권력의 한계와 동시에 시민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63) 이 선포지업의 주요 발표자는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대표인 켈리나(Celina deKofman), 광주항쟁을 직접 목격했던 유엔인권회 위원인 독일 퀼른대학의 음바야(Etienne Mbaya) 교수, 독일 출신의 헬가 피히트(Helga Picht) 흠클라우스대학 교수, 인류학자 린다 루이스(Linda Lewis) 교수, 이토 나리히고(伊藤成彦) 일본 주오대학 교수, 한국의 박원순 변호사 등이었다.

64) 이 연구성과들에 대한 체계적 정리작업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오. 『학술논문집,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1권~5권, 법학, 문학예술』(5·18기념재단 편, 2007, 광주: 도서출판 심미안); 『5·18민중항쟁의 연구현황—주요성과 요약집1~3』(5·18기념재단 편, 2009, 광주: 도서출판 심미안).

65)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5·18민중항쟁사』, 광주: 도서출판 고령, 2001.

66) 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도서출판 풀빛,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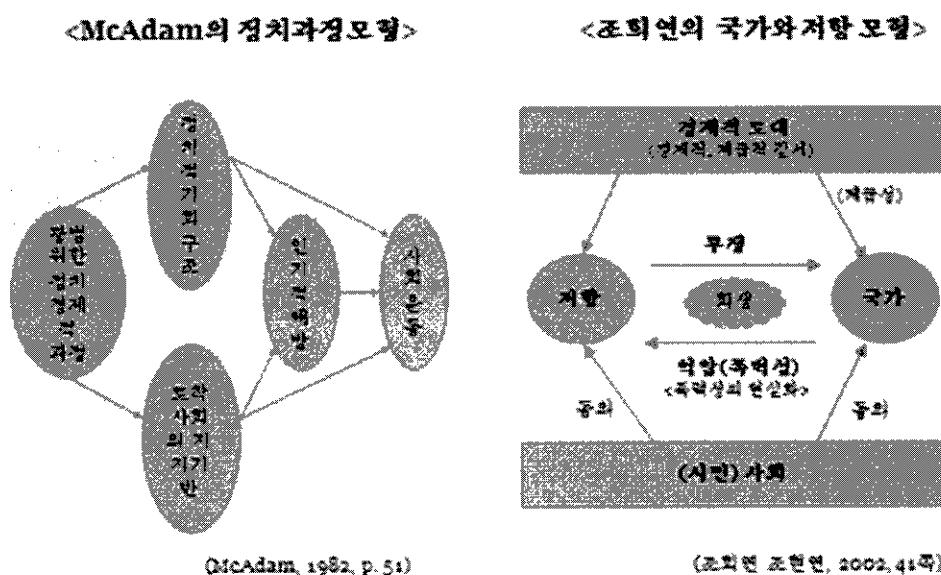
이다. 셋째로, 이 항쟁은 공히 대학생들의 학내시위로부터 시작되어 기층민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확산경로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두 항쟁의 시공간적적 근접성도 지적해둘 만하다. 이와 같은 환경조건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효과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포함하는 통일적 인식들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이 인식들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는 설명의 대상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주제인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이다. 그러나 이 두 항쟁의 중간 시기에 발생하여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26정변, 12.12쿠데타, 5.17계엄선포, 그리고 ‘서울의 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의 봄’은 두 항쟁의 중간 시기에 발생한 동질적 사건으로서 두 항쟁의 연속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대응행위인 정변과 쿠데타 및 계엄령 선포도 항쟁세력과의 관계형으로 당연히 검토된다.

두 번째 요소는 연구주제인 두 항쟁을 설명하는 기본 변인이다. 여기에서 기본 변인은 항쟁 세력의 저항과 국가권력의 억압행위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항쟁세력의 내적 구성과 결합 양상 및 행동방식, 그리고 이와 대응하는 국가형태 및 정권의 성격과 통제정책 등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과 강도가 항쟁의 수준과 형태를 규정할 것이다. 항쟁세력을 설명하는 변인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중시하는 관점<sup>67)</sup>도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하다. 부산, 서울, 광주지역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나 역사적 전통, 정치적 성향 등이 항쟁의 발생과 그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론적 자원이다. 이론은 항쟁 주체와 국가 간의 대립과 투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을 선별하여 명제화함으로써 구성된다. 현재 상태에서 두 항쟁을 설명하는 데 유관성이 높은 이론은 McAdam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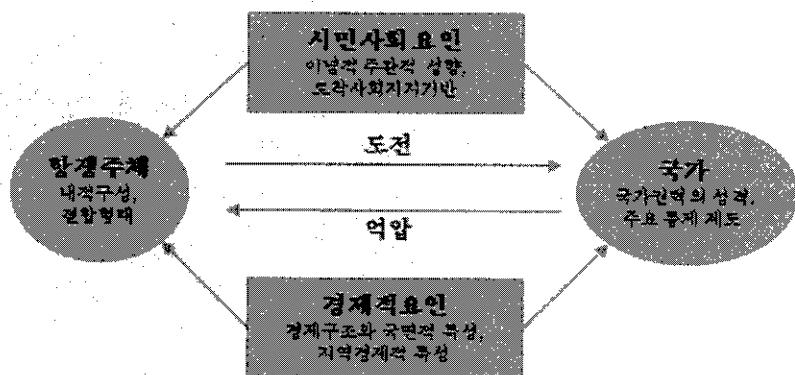
<도표1. 항쟁설명의 기준도식>



67) 이은진, 「한국의 민주화와 지역의 역할」,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부마항쟁30주년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도서출판 대성, 2009.

정치과정론political process theory과 조희연과 그의 동료가 개발한 <국가와 저항의 상호작용> 모형이다. 이 이론들은 항쟁의 발생과 전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나름대로 선별하여 하나의 인식틀로 구성하고 있다. 미국의 흑인항쟁을 정리했던 맥아담은 항쟁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적 기회구조, 토착사회의 지지기반, 운동주체의 인지적 해방을 주목했고,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조희연과 그 동료들은 경제적 토대와 시민사회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도표 참조).

<민주항쟁의 정치사회적 구성>



<도표2. 본 연구의 설명도식>

이 두 가지 모형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드러나는데, 전자는 토착사회적 요인이나 항쟁주체의 의식 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후자는 시민사회의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시민사회 요인은 그 포함내용이 광범하기 때문에 토착사회의 요인이나 주관적 요인들도 포함시킬 여지 있다고 본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항쟁을 국가권력과의 대립투쟁과정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시민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인식틀을 구성하려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항쟁에는 저항주체의 내적구성과 투쟁형태 등의 변인이 포함되고, 억압주체에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정치적 기회구조, 주요 정책과 억압방식 등의 요소가,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의 구조적 성격과 국면적 특성, 주요 경제지표 및 지역경제적 특성(부산, 마산, 서울, 광주)을, 시민사회적 요인에는 토착사회의 역사적 전통과 항쟁세력에의 지지도, 주관적 의식, 시민문화 등의 요소를 검토하려 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도표2 참조). 물론 이 경우에 시민사회의 요인이나 이데올로기적 요인 지역사회적 요인을 구성하는 구체적 변인을 설정하는 데는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항쟁의 제 측면을 비교적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 번째는 위의 도식을 근거하여 구성된 두 항쟁의 제 특성에 시간 차원을 개입시켜 비교한

다. 부마항쟁에 뒤 이은 10.26정변, 그리고 이 정변과 12.12쿠데타에 뒤 이어 발생한 서울의 봄, 그리고 5.17쿠데타에 뒤 이은 광주항쟁이 있다. 계기적으로 발생한 3개 항쟁 간에는 주요 측면의 특성에서 유사성과 차별성이 확인될 것이며, 이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으로 나아가는 항쟁의 진화적 이행양상을 일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4. 맷음말

이상에서 서술된 내용은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하나의 통일적 인식틀에 근거하여 연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접근전략이다. 이론적 실천으로서의 이와 같은 전략은 우선 각 항쟁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여, 다음에는 두 항쟁의 주요특성들에 대한 비교 결과를 공유하며, 최종적으로는 두 항쟁 간의 상호연계성을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은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경향을 넘어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한국 민주항쟁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 민주항쟁이라는 강물의 흐름의 밑바탕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사회문화적 정신적 핵심 요소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록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에 이르는 단기간의 역사이겠지만, 고도로 압축된 시간의 흐름 속에 진전된 항쟁의 실체를 탐색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는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을 거쳐 6월항쟁에 이르는 항쟁사 연구의 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민주항쟁에 관한 역사적 인식은 인간사회와 항쟁의 역사발전에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1979-1980년의 항쟁사는 21세기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항쟁을 위한 값진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외적으로 볼 때, 한국 민주화운동의 빛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연구결과는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자기성찰의 결과이다. 물론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이 적지 않은 성과를 실현한 것은 값진 자산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기록물이나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 특화된 주제의 운동사례에 관한 축적된 연구 성과가 이를 반영한다. 그 자체가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연구의 선행 작업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고 더 폭넓은 시각으로 사회운동의 흐름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희소한 현실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바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과편화되고 편향된 사회인식을 수반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현재화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불균형적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는가? 연구자로 하여금 장기적인 연구, 전체적인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연구자를 단기적 성과주의에 몰리게 만드는 학문정책의 소산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지식자원을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로 생산함으로써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통찰력보다는 고도로 분화된 기능주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기획은 인간과 사회의 전체성에 관한 통찰을 가로막는 학문정책에 대한 저항이고 도전인 것이다.





